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on Crime

연 성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 자연 성 진 (연구위원)

발 간 사

형사정책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과연 범죄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형사정책이 이론적·실증적 검증 없이 단순히 여론이나 정책입안자들의 의견이나 신념에 근거하여 수립된다면 정책적 일관성이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에 근거한 조사연구와 연구결과를 반영한 형사정책수립은 그 중요 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증적 연구를 통한 자료 수집과 연구결과의 축적은 우리 정서에 맞는 형사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사정책도 범죄 및 법제 도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수립과 방향제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 다.

이 연구는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과연 범죄자들에게 범죄 억제 기제로 작용하여 범죄율을 낮추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입 니다. 이 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억제이론이나 낙인이론은 형사사법적 개 입이 개인의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 반응 이론으 로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경험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론들입 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에 있어서 쟁점 이 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위협에 대한 인지 도에 따라 수형자들의 향후 범죄가능성이 어떻게 다른지 형벌을 받고 있 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 는 한번의 조사로 끝난 횡단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기존 연구들에 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검증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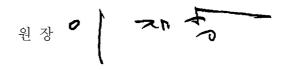
또한 이 연구는 법준수에 대한 수형자들의 태도가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으며, 법과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가 향후 범죄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교정정책의 방향에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범죄학의 이론적 발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형사정책 수립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심껏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목 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의 배경26
제2절 처벌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 27
1. 일반억제28
2. 처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인지연구33
3. 특별억제 38
4. 무력화40
5. 처벌의 낙인효과43
6. 수형자의 준법의식 47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51
제2절 주요 변인의 측정55

6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제4장 분석결과 (31
제1절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52
제2절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 6	37
제3절 낙인효과1()6
1. 범죄에 따른 낙인의 정도)8
2. 낙인과 범죄가능성11	14
3. 낙인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11	17
제4절 준법의식11	19
제5장 논의 및 결론12	25
참고문헌 12	29
영문요약13	37
부록 <설문지>	41

표 목 차

<표 3-1> 조사대상 교도소별 사례수51
<표 3-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53
<표 3-3> 조사대상자의 범죄유형별 분포 54
<표 3-4> 조사대상들의 범죄경력별 분포55
<표 4-1> 교정프로그램의 종류
<표 4-2> 범죄의 동기
<표 4-3> 면회수
<표 4-4> 편지 교환수64
<표 4-5>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
<표 4-6> 교도관에 대한 태도
<표 4-7>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
<표 4-8> 소내 작업/직업훈련의 만족도67
<표 4-9> 엄벌의 범죄억제효과67
<표 4-10> 공식적 및 사회적 억제력, 수치심에 대한 태도 70
<표 4-11>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 71
<표 4-12>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 71
<표 4-13> 향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 72
<표 4-14> 처벌의 확실성과 본인의 향후 범죄가능성73
<표 4-15> 처벌의 확실성과 타인의 출소 후 범죄가능성73
<표 4-16> 주위사람에게 들킬 가능성
<표 4-17>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 ···································
<표 4-18> 경찰에 즉시 파악될 가능성
<표 4-19>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77
<표 4-20> 검거되었을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표 4-21> 처벌될 경우 가족들의 실망
<표 4-22> 처벌될 경우 주위사람들의 외면80
<표 4-23> 처벌될 경우 장래 직업 등의 불이익80
<표 4-24> 발각되지 않더라도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81
<표 4-25> 발각되지 않더라도 체면손상을 느끼는 정도82
<표 4-26> 복역수에 따른 향후 범죄가능성 83
<표 4-27> 전과수에 따른 범죄가능성
<표 4-28>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폭행-상해)85
<표 4-29>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침입절도)86
<표 4-30>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절도)
<표 4-31>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강도) 8
<표 4-32>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성범죄) 8
<표 4-33>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사기·횡령) ···································
<표 4-34>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약물범죄)
<표 4-35>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폭행·상해) ···································
<표 4-36>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침입절도)91
<표 4-37>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절도)91
<표 4-38>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강도)92
<표 4-39>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성범죄)93
<표 4-40>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사기·횡령) ·············93
<표 4-41>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약물범죄)94
<표 4-42> 규칙의 합리성과 범죄가능성95
<표 4-43> 규율적용의 공정성과 범죄가능성96
<표 4-44> 수형생활의 적응정도와 범죄가능성 97
<표 4-45> 수형생활의 고통정도와 범죄가능성
<표 4-46> 개과천선의 정과 범죄가능성

<班 4-47>	교도관의 태도의 공정성과 범죄가능성 99
<班 4-48>	교도관들의 고충처리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99
<班 4-49>	의료서비스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100
<班 4-50>	거실 수형자 수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101
<班 4-51>	작업훈련시설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102
<班 4-52>	교도작업/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범죄가능성 … 103
<班 4-53>	엄중한 처벌의 효과와 향후 범죄가능성 103
<班 4-54>	억제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확실성 105
<班 4-55>	억제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엄격성 106
<班 4-56>	범죄 이후의 인식변화107
<班 4-57>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108
<班 4-58>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109
<班 4-59>	주변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109
<班 4-60>	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110
<표 4-61>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110
<표 4-62>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111
<표 4-63>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112
<班 4-64>	주변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cdots 112$
<班 4-65>	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113
<표 4-66>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113
<班 4-67>	낙인과 범죄가능성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114
<표 4-68>	낙인과 범죄가능성
	-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115
<班 4-69>	낙인과 범죄가능성
	-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116

10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표 4-70> 낙인과 범죄가능성-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116
<표 4-71> 낙인과 범죄가능성-나에 대해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117
<표 4-72> 낙인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118
<표 4-73>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120
<표 4-74> 법의 분쟁해결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121
그 림 목 차
ъ , ,
<그림 4-1> 가장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인식122
<그림 4-2> 법준수에 대한 태도123
<그림 4-3>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123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 기제로 작용하여 범죄율을 낮추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이다. 이 연구는 먼저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과 경험적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론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처벌의 효과를 검증하는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이다. 억제이론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데에는 종 단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하여 기존의 이론검증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능한 한 시 도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가.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범죄를 행한 결과 따라오는 처벌에 대한 위협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 억제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처벌의 위협이낮을 경우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그 범죄억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을 것이다.

처벌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 억제(specific deterrence)의 두 가지 억제기제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일반억제

일반억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본다.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certain) 엄격한(severe) 처벌은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제효과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총기사용에 대한 처벌과 범죄율의 관계를 양형을 통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강제적인 처벌규정이 범죄율과 어떤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사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사형집행 이후에 곧바로 전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범죄율에 차이가 있는가, 사형집행 전후로 해서 범죄율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사형의 단기효과에 대해서는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잔인성 효과(brutalization effect)를 지지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사형이 살인률을 실제로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다. 사형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비교나 국제간 비교연구에서 사형집행이 살인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시계열분석 연구에서는 1명의 사형집행이 7~8명의 다른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 연구는 사형옹호의 근거로 흔히사용된다.

사형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처벌이 범죄억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처벌의 위협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인에게 인지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격정범죄(crime of passion)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범죄에서는 개인들이 범죄에 대한 손실과 이득을 계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인지연구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뚜렷하게 일관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위협을 크게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범행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는 반 면, 다른 연구에서는 처벌의 두려움과 범죄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약 자들에게 있어서 처벌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하는 점과 또 기존 연구들이 대개 대학생들이나 대마초 흡연자들과 같은 경범죄자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처벌이 갖는 범죄억제 효과보 다는 경험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 가 이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억제효과보다는, 이전의 범죄행위 와 이로 인한 처벌 여부가 현재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험효과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험효과라 는 것이 특별억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처벌에 대한 인식이 실제 처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됨에도 실제 연구들에서는 단지 처벌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관계만을 조사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 전과가 많을수록 법적 제제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벌의 억제효과는 처벌이 아주 엄격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의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 특별억제

일반억제가 처벌을 통하여 처벌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면, 특별억제는 처벌의 가혹성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향후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논지를 편다. 이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지지하는 쪽보다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초범자가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거나 비행청소년 중에 상습범 이 장래 성인범죄자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든가, 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특별억제효과를 약화시 키는 연구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은 처벌이 재범률 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억제효과가 없다면 적어도 범죄자들을 시설 내에 수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범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무력화(incapacitation)효과이다. 그러나 이 논지도 그리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고 못하고 있다.

나. 처벌의 낙인효과

낙인이론에서는 일탈로 인한 낙인이 또 다른 범죄와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낙인은 대체적으로 자기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곧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 이론은 주장한다. 범죄행위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어 공식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에 이 이론은 관심을 가진다. 낙인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누가 범죄자나 일탈자로 낙

인찍히는가 하는 문제와 낙인을 찍힌 개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종적 배경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낙인이 개인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또한 낙인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반복하게 한다는 점도 경험적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벌이 개인의 계층, 인종 등의 변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적・환경적・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만만치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분석 결과

전국의 13개 교도소의 수형자 9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수형자들을 교도소 입소횟수별로 보면, 약 절반에 가까운 45%가처음 입소한 수형자이고 두 번째 입소가 19.9%, 나머지 20% 남짓한 수형자가 4회 이상이다. 조사항목에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 낙인, 향후 범죄가능성, 법에 대한 태도,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통제 변인들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상대적 박탈감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전체 응답자 중에서 60.4%가 교도소 규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응답자의 74%가 수형생활을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절반이상의 수형자들이 교도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절반 이상의 수형자들은 범죄에 대한 엄벌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

처벌에 대한 확실성 혹은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향후 범죄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전과수 내지 복역수가 처벌의 확실성/엄격 성의 관련성, 또 미래 범죄가능성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면,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향후 범죄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벌의 사회적비용이나 직업상의 불이익 등을 크게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처벌횟수와 범죄가능성을 보면,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향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응답하고 있어 특별억제이론과는 상반되는 교차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복역횟수에 따른 각 범죄별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사기·횡령, 약물범죄의 경우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처벌의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폭행, 절도, 강도 등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표출적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수형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시설 내 수용과정을 통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결국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교도소 생활에 적응정도와 향후 범죄 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수형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도관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는 수형자일수록 출소한 다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범죄억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사회적 긴장, 상대적 박탈감, 복역수와 같은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큰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이 증가하고 복역수가 많을수록 출소 후 범죄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복역수가 출소 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단지 처벌의 확실성이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낙인효과

낙인과 범죄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교차분석 결과들을 보면, 첫 범 죄이후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였던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낙인이론의 논지와 부합하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낙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긴장인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자아존중 감이 낮은 수형자일수록, 사회적 긴장이 높은 수형자일수록 범죄자로서 낙 인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능성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람들일수록,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역 시 범죄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변인들을 통 제하고 난 후에도 사회적 낙인은 개인의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수형자일수록 장래 출소 후 본인이 범죄를 다시 행할 가능성을 높이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낙인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낙인의 범죄증폭 효과를 검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범죄가능성에 직접 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분석결과와 대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준법의식

우리 사회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6.4%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조사에서 74.7%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서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준법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처벌경험에서 오는 인식상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을 경시하면서도 사회적 강제규범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 결론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나 처벌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존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 중에는 처벌위협을 크게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범행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관계가 거의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처벌위협에 따라 수형자들에게 있어서 향후 범죄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위협이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험(즉 복역횟수)을 매개로 하여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억제효과보다는 경험효과가 오히려 범죄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복역횟수가 낙인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낙인효과 그 자체는 향후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 보다는 낙인효과가 더 확실하게 향후 범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정행정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수형생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과 향후 범죄가능성과는 부적인(negative)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교도소 내 규칙의 합리성, 교도관들의 태도, 소내 생활에의 적응 정도 등이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할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면 교도소 시설과 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수형자들로 하여금 재사회화되 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수형자들 은 대부분 교정시설이 수형자에게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시설이나 치료에 대한 불만족, 작업장이나 직업훈련시설의 열악함과 더불어 특히 거실공간에 과다 수용되어 있는 문 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수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범죄억제이론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범죄자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갖는 범죄억제 및 예방 효과에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위협이 범죄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하여금 시설 내 수용을 통하여 새로운 범죄를 학습하기도 하고 출소 후전과자의 오명이 오히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또 다른 짐으로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처벌의 경험이 오히려 범죄경력을 쌓게 하고 향후 범죄를 조장하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연구현실을 보면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처벌이 범죄와 범죄억제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연구가 많지 않다.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과연 범죄자들에게 범죄억제기제로 작용하여 범죄율을 낮추게 되는지 심도있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떠한 기제에 의해서 국가에 의한 형벌이 범죄자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형사정책 전반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연구 과제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에 의한 범죄자 처벌이 과연 범죄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기존 범

죄학 연구에 있어서 처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가 가능한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형자들로 하여금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정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면, 교도소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법과 범죄 및 처벌에 대한 태도가 범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 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먼저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의 내용과 이들을 검증하고자 시도했던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억제이론과 더불어 흔히 이와 대비되는 이론으로 제시되는 낙인이론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는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기존 연구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반응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처벌이나 통제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로서 사회적 반응으로서의 범죄현상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 과 범죄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상충되거나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억제이론이나 낙 인이론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경 험적 조사자료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형자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억제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설들을 검증하도 록 한다.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는 전국의 교도소 중에서 무작위로 13개 교도소를 추출하고 이 각 교도소에서 80명 내지 100명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self-reported survey)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의 내용들은 범죄에 대한 공식적 제재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재를 포함시켰으며억제이론의 상대이론으로 흔히 제기되는 낙인이론(labeling theory) 관련항목들도 조사하였다. 또한 수형자들이 수형생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들 수형자들이 법과 준법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도 조사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 기존 범죄원인론에서 중요한 이론적 지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론들인 억제이론과 낙인이론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연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는지,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볼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다양한 이론들과 논지들을 검증해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항에 범죄의 종류, 범죄의 경력, 수용생활에 대한만족도, 범죄와 법에 대한 태도 등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단순한 이론적 검증이 아니라 교정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처벌의 효과를 검증하는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라는 점에서 종단적 연구에서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컨대, 범죄와 처벌에 대한 태도와 그 태도가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에 대해서는 패널연구와 같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더 상세히 밝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억제이론을 검증하는 횡단적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던 여러 가지

24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이론적 명제들을 이 연구는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억제이론의 다양한 논의를 수용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전통적으로 볼 때 범죄이론들은 범죄는 왜 일어나는가, 개인에게 있어서 범죄행위를 유발시키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들(causes)이 무 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범죄를 유발시키는 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들이 대두되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이론이 낙인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는 개인이나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왜 어떤 행위나 행위자가 범죄나 범죄자로 낙인을 받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 인다. 범죄자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낙 인찍혔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즉 사회적 반응, 나아가 처벌이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분 야 중의 하나는 청소년 비행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형 사사법기관의 개입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탈자라는 낙인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낙인은 장래 이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처벌은 개 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마땅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때에 따라서는 처벌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본다. 한편, 낙인 이론적 관점은 처벌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자의성(discretion)으로 인하 여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범죄를 억제하고 방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범죄를 조장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다. 낙인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 원인론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낙인이론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기존 범죄원인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억제이론은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 즉, 국가형벌에 그 관심의 초점을 돌리면서, 처벌이 개인의 범죄행위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인다. 억제이론 또한 사회통제 내지는 사회적 반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낙인이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논거와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1절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의 배경

범죄가 개인의 선택에 의한 행위라는 관점은 범죄도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로 인해 얻게 될 이익과 손실을 고려한 후 개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선택이론은 18세기 중엽 범죄학의 고전이론 (classical theory)으로 불리는 사상적 배경과도 통한다. Bentham이나 Beccaria로 대표되는 고전범죄학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기본 가정에 충실하였다.

19세기말까지 고전범죄학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범죄의 원인으로서 빈곤이나 교육 등 환경적인 요인들에 관심을돌리면서 이와 같은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요인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당시 또한 심리학적 치료방법이 발달되면서 처벌(punishment)보다는 교화 (rehabilitation)가 형사사법제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실증주의 범죄학의 발달로 그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이 범죄학 영역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보다 최근의 일이다. 고전범죄학이 관심을 가졌던 처벌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1970년대 말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는 곧 교화 (rehabilitation)를 중시하는 실증주의 범죄정책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5년 James Q. Wilson은 범죄가 외적인 요인들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실증주의적 입장에 공격을 가하였다.1) 그는 범죄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기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금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확실하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회학에서는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으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 경제학 배경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라는 이름아래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그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절 처벌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

범죄를 행한 결과로서 따르는 처벌의 위협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 억제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처벌의 위협이 낮을 경우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제대로 그 범죄억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처벌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억제기제의 차원에서 살펴볼

James Q. Wilson, 1983, Thinking About Crime, revised ed. New York: Vintage Books, p.260.

수 있다. 그것은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 이다.

1. 일반억제 (general deterrence)

일반억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 사회의 범죄율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위협에 반비례해서 존재한다.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인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범죄자를 처벌할 확률이 높아짐에따라 전체 범죄율은 낮아진다. 예컨대 경찰이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범인인지의 확실성을 높인다거나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다면 범죄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한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certain) 엄격한(severe) 처벌은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제효과가있게 된다.

가. 처벌의 확실성(certainty)

처벌의 확실성이 증가한다면 범죄율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이 이론은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범죄인이라면 처벌이 범죄로부터 오 는 이득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 이후로 수많은 연구들이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Tittle과 Rowe의 연구는 경찰의 체포율과 범죄율의 관계를 미국 플로리다의 시와 군단위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보았다. 이연구는 경찰의 체포율(전체 범죄 건수 중 체포로 이어지는 비율)이 30%이상인 지역에서 범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2)

나. 처벌의 엄격성(severity)

한 실험연구에서 케이블 TV의 불법시청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기기 (descrambler)를 사용하는 가정에 불법시청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통상적인 경고편지를 보내고 난 후 6개월 후 불법시청행위를 계속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모든 가정에서 이 기기를 감추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를 확인해주는 연구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3)

다른 연구들은 총기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율의 관계를 양형을 통해 연구했다. 총기를 사용한 중범죄에 대한 강제규정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연구들은 양형에 있어서 강제규정이 범죄율에 어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4)

다. 사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효과

가장 엄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이 과연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은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를 연구함에 있어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사형이 가져다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율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하는 점은 전체 억제이론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사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²⁾ Charles R. Tittle and Alan R. Rowe 1974, Certainty of arrest and crime rates: A further test of deterrence hypothesis, Social Forces 52: 455-62.

³⁾ Gary Green 1986, General deterrence and television cable crime: A field experiment in social crime, Criminology 23: 629-45.

⁴⁾ Jeffrey Roth, Firearms and Violence, 1994, 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Thomas Marvell and Carlisle Moody, 1995, The impact of enhanced prison terms for felonies committed with guns, Criminology 33: 247–81.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첫째, 사형 집행 이후에 곧바로 전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범죄율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형 집행을 전후로 해서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통해서 볼 때 범죄율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연구들이 그것이다.

1) 사형의 단기효과

사형집행은 일반에게 알려지고 난 직후에 그것이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형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억제효과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범죄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하지만 많은 범죄학자들은 사형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범죄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고,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 비록 단기간이나마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사형집행이 범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논지는 잔인성 효과(brutalization effect)라고 부른다. 즉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통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똑같이 그와같은 행위를 모방하도록 하여 실제로 살인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5)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 사형이 살인률을 감소시킨다고 본다.6) Steven Stack의 연구는7) 16개의 사형집행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사형집행을 통해

⁵⁾ William Bowers and Glenn Pierce, 1980, "Deterrence or brutalization: What is the effect of executions?" Crime and Delinquency 26: 453-84. John Cochran, Mitchell Chamlin, and Mark Seth, 1994, Deterrence or brutalization? An impact assessment of Oklahoma's return to capital punishment, Criminology 32: 107-34.

⁶⁾ David Phillips, 1980,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merican Journal of 32: 107-34; Sociology 86: 139-48; Hans Zeisel, 1982, A comment on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by Philli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167-69; Sam McFarland, 1984, Is capital punishment a short-term deterrent to homicide? A study of the effects of four recent American execu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1014-32.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범죄로 인하여 희생당할 수도 있었던 480명의 인명을 구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2) 비교연구(Comparative studies)

Karl Schuessler는 1930년에서 1949년 사이에 미국 11개 주에서 살인율과 사형위험도(execution risk: 1,000건의 살인범죄당 사형집행 수치)를 분석하였는데 각 주의 살인율과 사형위험도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사형이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9)

보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조차 사형집행이 살인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0)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살인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사형집행 실적이나 사형제도가 있는가의 여부가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11) 또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도 사형제도는 폭력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사형이 폐지되고 난 후에 살인율이 감소하여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2)

⁷⁾ Steven Stack, 1987, Publicized executions and homicide, 1950-198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532-40.; Stack의 연구방법론을 반박하는 연구로서 William Bailey and Ruth Peterson, 1989, Murder and capital punishment: A monthly time-series analysis of execution publi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722-43.을 볼 것.

⁸⁾ Karl Schuessler, 1952, The deterrent influence of the death penalty, Annal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284: 54-62

⁹⁾ Thorsten Sellin, 1959, The Death Penalty (Philadephia: American Law Institute, Walter Reckless, 1969, Use of death penalty, Crime and Delinquency 15: 43–51.

¹⁰⁾ Richard Lempert, 1983, The effect of executions on homicides: A new look in an old light, Crime Delinquency 29: 88-115.

¹¹⁾ Derral Cheatwood, 1993, Capital punishment and the deterrence of violent crime in comparable counties, Criminal Justice Review 18: 165–181.

¹²⁾ Dane Archer, Rosemary Gartner, and Marc Beittel, 1983, Homicide and the death

3) 시계열분석 Time series analysis

Issac Ehrlich는 사형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에서 일년에 1명의 사형집행이 7-8명의 다른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13) 이 연구는 사형옹호론자들의 주장의 근거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Ehrlich의 연구를 반복한 다른 연구에서는 사형이 단지 종신형과 다름없는 범죄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요약해 보면, 사형제도가 갖는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한 연구에서 사형제도 그 자체나 사형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범죄 억제 이론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왜 사형과 같은 가장 엄격한 처벌이 범죄억제 효과를 갖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억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처벌의 위협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인에게 인지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살인과 같은 격정범죄(crime of passion)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에서는 개인들이 범죄에 대한 손실과 이득을 계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한다. 예컨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약물의 영향아래서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 가운데 바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처벌의 엄격성만 가지고는 범죄억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논의가 설득력 있을 수 있다.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범죄억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penalty: A cross-nattional test of a deterrence hypothesi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991-1014.

¹³⁾ Issac Ehrlich, 1975,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American Economic Review 65 (1975): 397-417.

2.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인지연구

개인이 처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은 범죄억제 효과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에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는 크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그리 크지 않다면 그 처벌이 갖는 범죄억제 효과는 낮고 따라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개인이 처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의 정도에 따른 범죄 가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뚜렷하게 일관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위협을 크게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범행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¹⁴⁾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장래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한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severe) 경우보다는 범죄가 체포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확실할수록 처벌의

¹⁴⁾ Donna Bishop, 1984, Deterrence: A panel analysis, Justice Quarterly 1: 311-28. Julie Horney and Ineke Haen Marshall, 1992, Risk perceptions among serious offenders: The role of crime and punishment, Criminology 30: 575-94.

¹⁵⁾ Wanda Foglia, 1997, Perceptual deterr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norms among inner-city teenag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14-42; Raymond Paternoster, 1989, Decisions to participate in and desist from four types of common delinquency: Deterrence and the rational choice perspective, Law and Society Review 23: 7-29; Raymond Paternoster, 1988, Examining three -wave deterrence models: A question of temporal order and specificatio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9: 135-63; Raymond Paternoster, Linda Saltzman, Gordon Waldo, and Theodore Chiricos, 1983, Estimating perceptual stability and deterrent effects: The role of perceived legal punishment in the inhibition of criminal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270-97; M. William Manor and Joseph Harry, 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190-203; Lonn Lanza-Kaduce, 1988, Perceptual deterrence and drinking and driving among college students, Criminology 26: 321-41.

범죄억제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16) 또 다른 경험적 연구들은 범죄가 체포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을수록 세금포탈이나 절도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17)

이와 같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억제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처벌을 통해 이들이 잃는 것이 많지 않다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제로 공권력에 의한 처벌조차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가 낮은 이유 내지는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중의 하나는 대학생과 같은 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하거나 대마초 흡연자와 같은 경범죄자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범죄자들 내지 전과자들은 사회규범에 대한 순응정도가 낮고 미래에 있을 처벌의 위협에 크게 겁먹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억제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귀기울여야 할 점이다. 18) Paternoster 등은 범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보다 처벌의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

¹⁶⁾ Harold Grasmick and Robert Bursik,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24:837-61.

¹⁷⁾ Steven Klepper and Daniel Nagin, 1989, The deterrent effect of perceived cera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revisited, Criminology 27: 721–46; Scott Decker, Richard Wright, and Robert Logie, 1993, Perceptual deterrence among active residential burglars: A research note, Criminology 31: 135–147

¹⁸⁾ Eleni Apospori, Geoffrey Alpert, Raymond Paternoster, 1992, The effect of involvement of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neglected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perceptions, Justice Quarterly 9: 379–92.

¹⁹⁾ Paternoster, Raymond, Linda E. Saltzman, and Gordon P. Waldo, 1985, Assessments of risk and behavioral experience: An exploratory study of change, Criminology 23 : 417-36. p.429

나아가, Paternoster와 그 동료들의 연구에서 처벌이 갖는 범죄억제효과보다는 경험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Paternoster와 그 동료들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횡단적 연구로서 동일 시점에서 범죄에대한 인지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질문함으로써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인지가 범행전인지 후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고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범죄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가 이후의 범죄에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억제효과 보다는 이전의 범죄행위와 이로 인한 처벌 자체가 처벌에 관한 현재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효과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0) 즉, 과거 법위반의 경험이 많을수록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경험효과라는 것이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와 사실상 다르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억제는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경험효과라는 것이 결국 억제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처벌의 억제효과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과거 빈번한 체포경험이 형사제재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특별억제와 모순된다고 보아야 한다. Paternoster와 동료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과거의 범죄행위와 처벌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측정했을 뿐이다. 실제 범죄행위가 과거에 얼마나 처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관계, 즉 처벌경험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억제이론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경험효과와 모순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힘들다.

또 연구는 전과가 많을수록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을 보여 준다.²¹⁾ 즉 처벌을 받은 경험은 오히려 범죄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²⁰⁾ Paternoster, Raymond, Linda E. Saltzman, Gordon P. Waldo, and Theodore G. Chiricos, 1983,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Do sanctions really deter? Law and Society Review 17: 457-80.

있다는 것이다. 처벌경험이 억제효과가 있는 경우는 처벌이 아주 엄격할 경우에 한하여 경험 있는 범죄자들에게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²²⁾

비공식적 제재

공식적인 법적 제재에 대한 위협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범죄자 혹은 일탈자나 그 들의 행위에 대해 불만, 비난, 낙인, 분노, 경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 이는 경우나 그와 같은 반응을 인지하였을 때 느끼는 비공식적 제재는 의 미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 수치심이나 여러 사람에 의한 경멸에 대한 두 려움은 일탈이나 범죄행위의 억제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본다. 실제 경험 적 연구결과들은 비공식적 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인 범죄억제효과가 있으 며 공식적인 법적 제재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 다.23)

도덕적 가치에 순응하는 사람들과 범죄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규위반을 덜 한다는 연구도 있다.²⁴⁾ 예를 들어, 영국에서 행해진 한연구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게 될수록음주운전을 줄이는 도덕적 분위기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덜하게 된다고 한다.²⁵⁾

²¹⁾ Apospori, Alpert, and Paternoster, 1992: 139.

²²⁾ Eleni Apospori and Geoffrey Alpert, 1993, Research note: The role of differential experie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changes in perceptions of severity of legal sanctions over time, Crime and Delinquency 39: 184-94.

²³⁾ Tittle, Charles,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New York: Frager.

²⁴⁾ Burkett, Steven and David Ward, 1993, A note on perceptual deterrence, religiously based moral condemnation, and social control, Criminology 31: 119-34.

²⁵⁾ Snortum, John, 1990, Drinking-driving compliance in Great Britain: The role of law as a 'threat' and as a 'moral eye-open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8: 479-99.

또 다른 연구에서, Zimring과 Hawkins는 비행청소년들이 경찰체포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체포에 대한 부모의 반응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법적 처벌이 비공식적 제재를 수반했을 때 더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²⁶⁾

수치심(shame)과 당혹감(embarrassment)은 비공식적 제재로서 범죄억 제효과가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범행을 함으로써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27) 한 개인이 범행을 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죄를 덜저지르게 된다.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한 사회적 모욕감을 인식하는 사람들 일수록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낮아진다.28)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보기로 하자. Grasmick과 동료들은 음주운전에 있어서 수치심이 중요한 범죄억제기제임을 조사연구를통해 밝히고 있다.²⁹⁾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학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따돌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과

²⁶⁾ Zimring, Franklin and Gordon Hawkins, 1973, Deterrenc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²⁷⁾ Green, Donald, 1989, Past behavior as a measure of actual future behavior: An unresolved issue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0: 781-804 (p.803); Mathew Silberman, 1976, Toward a theory of criminal deterrence, ASR 41: 442-61; Linda Anderson, Theodore Chiricos, and Gordon Waldo, 1977,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A comparison of deterrent effects, Social Problems 25: 103-114. See also Maynard Erickson and Jack Gibbs, 1978, Objective and perceptual properties of legal punishment and deterrence doctrine, Social Problems 25: 253-64; Daniel Nagin and Raymond Paternoster, 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27: 467-85.

²⁸⁾ Grasmick, Harold and Robert Bursik,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24: 837-61, p.854.

²⁹⁾ Grasmick, Harold, Robert Bursik, and Bruce Arneklev, 1993, Reduction in drunk driving as a response to increased threats of shame, embarrassment, and legal sanctions, Criminology 31: 41-69.

당혹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30)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비공식적 제재가 반드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범죄에 있어서 범죄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비공식적 제재의 효과가 크며 또 충동적인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나 약물관련 범죄 보다는 도구적 범죄에 억제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난다.31)

지금까지 일반억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은 처벌의 범죄억 제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특별억제에 대한 이론 과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특별억제

일반억제가 처벌을 통하여 처벌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면, 특별억제는 처벌의 가혹성으로 인해서 전과자가 향후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논지를 제시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과거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범행과 가혹한 처벌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죄를 지을 확률을 낮 춘다고 이 이론은 보고 있다.

특별억제이론을 검증하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특별억제에 대한 지지보다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범죄를 행하고 체포당한 경험이 있는 초범자들은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³⁰⁾ Grasmick, Harold, Brenda Sims Blackwell, and Robert Bursik, 1993, Changes in the sex patterning of perceived threats of shame, embarrassment, and legal sanctions, Criminology 31: 41–69.

³¹⁾ Peete, Thomas, Trudie Milner, and Michael Welch, 1994, Levels of social integration in group contexts and the effects of informal sanction threat on deviance, Criminology 32: 85–105.

증가하는 연구라든가,32) 비행청소년 중에 상습범(chronic offenders)의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은 경우 장래 성인범죄자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은33) 특별억제 논지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

더구나 수용자들 대부분이 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습범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특별억제효과를 약화시키는 연구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34) 또 중범죄자의 3분의 2가 석방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로 체포된다는 연구가35) 있는 것을 보면, 구금으로 인한 무력화(incapacitation)는 단기간에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지만 결국 처벌은 장기적으로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6)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한 연구에 의하면 징역형이 사회 내 처우보다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7) 한편,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도 기타 사회 내 처 우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실제로 어떤 연구들은 처벌이 범죄를 줄이기보다는 재범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³⁸⁾ 사실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의문을

³²⁾ Dejong, Christina, 1997, Survival analysis and specific deterrence: Integra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s of recidivism, Criminology 35: 561-76.

³³⁾ Tracy, Paul and Kimberly Kempf-Leonard, 1996,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riminal Careers (New York: Plenum Press.

³⁴⁾ Greenfeld, Lawrence, 1985, Examining Recidivism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³⁵⁾ Beck, Allen and Bernard Shipley, 1989,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83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³⁶⁾ Dejong, 1997, p.576.

³⁷⁾ Weisburd, David, Elin Waring, and Ellen Chayet, 1995, Specific deterrence in a sample of offenders convicted of white-collar crimes, Criminology 33: 587-607.

³⁸⁾ Paternoster, Raymond and Alex Piquero, 1995, Reconceptualizing deterrence: An empirical test of personal and vicarious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 251-258.

제기하는 충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어 보인다. 처벌이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처벌의 오명만을 남기는 것은 아닌가, 또 억제효과가 아니라 처벌로 인한 반항심(defiance)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처벌은 개인의 정체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개인을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범죄의 억제효과와 낙인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

4. 무력화(incapacitation)

적어도 범죄자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범행을 하기 힘들다. 특히 개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시기의 대부분을 시설 내에서 보낸다면 그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의 총량은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사회의 범죄율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력화효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논지를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에는 어느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그 자리를 메우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른 부류의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조직폭력 일부가 감금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다분히 크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무력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전체 범죄율과 구금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불행히도 무력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들은 이 효과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이 구금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강력한 구금정책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39) Greenberg에 따르면, 교도소수용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경우 범죄율은 단지 4%만 올라간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 모든 교도소가 문을 닫게 된다면 범죄는 8% 올라간다고 예측하고 있다.40)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양형이 50% 증가한다면 범죄율은 4% 감소하게 된다고 그는 예측하고 있다.41)

몇 몇 연구에서는 구금과 범죄율 사이에 반비례 관계를 발견했다. 뉴욕시에서 폭력형 범죄에 대한 5년의 징역형, 재산범죄에 대한 3년형은 인구십만명당 범죄율을 4~5정도 줄였다고 보고하고 있다.⁴²⁾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강력한 구금정책은 폭력범죄를 줄인다고 보고 있다.⁴³⁾

구금이 과연 어떻게 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구금의 경험은 오히려 장래 재범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어 범죄를 줄이는 단기효과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범죄율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⁴⁴⁾ 교도소 수용자들의 구금횟수가 많을수록 석방 후 12개월 이내에 죄를 지어 다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이 범죄를 줄일 수 없는 다른 이유로서는 앞에서 잠시 지적했듯이

³⁹⁾ Erlich, Isaac, 1973,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A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521-67; Bowker, Lee, 1981, Crime and the use of prisons in the United States: A time series analysis, Crime and Delinquency 27: 206-12.

⁴⁰⁾ Greenberg, David, 1975, The incapacitation effects of imprisonment: Some estimates, Law and Society Review 9: 541-80.

⁴¹⁾ Greenberg, 위의 책 p.558.

⁴²⁾ Shinnar, Reuel and Sholomo Shinnar, 1975, The effec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n the control of crime: A quantitative approach, Law and Society Review 9: 581-611.

⁴³⁾ Marvell, Thomas and Carlisle Moody, 1997, The impact of prison growth on homicide, Homicide Studies 1: 205-233.

⁴⁴⁾ Wallerstedt, John, 1984, Returning to Pris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람들을 구금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직범죄로 일부 조직원이 시설내에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원들에 의해 같은 마약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구금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범죄가 청소년과 젊은층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구금되어 나이를 먹어가는 수형자들은 이미 범죄를 저지를 나이가 지나기 때문에 단순히 구금된 사실만으로 그 사회 내에서 범죄율을 예측하기란 힘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강력한 구금정책은 새로운 범죄자들을 막는데 큰도움을 주지 않게 되고 범죄율은 구금율과 관계없이 어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삼진아웃제(three strikes law)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진아웃제는 폭력성 범죄자에 대해서 세 번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 없이 종신형 내지는 장기 자유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형을 살고 있는 일부분의 범죄자들이 일반 범죄자들보다 훨씬 많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이들을 시설 내에서 수용할 경우 범죄율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논지를 편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45) 대부분 3범의 경우 이미 나이가들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기 힘든 경우가 많고, 현재 폭력형 범죄에 대한 양형이 이미 충분히 엄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이미 과밀상태인교도소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본다.(46) 다구나 이 정책은 양형에 있어서 인종집단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또 2범의 경우 세 번째 범죄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

⁴⁵⁾ Siegel, Larry J., Criminology, 2000, p.138.

⁴⁶⁾ Territo, Leonard, James B. Halsted, and Max L. Bromley, 1998, Crime and Justice in America: A Human Perspective (fifth edi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p.496

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수용자들 가운데 3범 이상의 누범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삼진아웃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 처벌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주면서 무력화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은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5. 처벌의 낙인효과

처벌이 갖는 범죄억제 효과와 더불어 검토해보아야 하는 이론적 관점은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이다. 사회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붙이는 공식적, 비공식적 낙인과 일탈/범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이 이론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인이론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범죄와 일탈로 인한 낙인이결국 또 다른 범죄와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찍힌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범죄와 일탈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낙인이 자기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곧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이론은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낙인이 직접 범죄와 일탈을 산출해내는가 하는 점이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가들은 (e.g., Gibbs, 1966; Bordua 1967; Akers 1968) 사람들은 대부분 낙인과 관계없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다시 범죄를 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낙인이론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낙인이론가들은 낙인이 범죄와 일탈의 유발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 다. 물론 그 중요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낙인이 론이 반드시 일탈이나 범죄를 직접 설명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는 점에 있 어서도 일정치는 않다. Becker나 Schure, Lemert는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설명하는 범죄이론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도록 의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론가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낙인이 갖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cker에 따르면, 안정적인 일탈유형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체포되어 공식적으로 낙인찍히는 경험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이 낙인찍히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행동의 성격에 달려있다고보지 않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체포되고 낙인찍히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참여와 자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48) 또, Schur에 따르면,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비행의 원인은 아닐지 몰라도 비행의 이해에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9)

Lemert도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이란 개념을 가지고 낙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일차적 일탈에 대한 낙인이 없었더라면 범하지 않았을 부가적인 일탈을 말한다.50)

이와 같이 낙인은 새로운 일탈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러 낙인이론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낙인여부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범죄자로 남게 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대부분의 낙인이론들은 어떤 범죄나 일탈행위가 그렇게 규정되지 않고 낙인을 부여받지 않는다면계속적인 범죄나 일탈로 발전되지 않지만 범죄자나 일탈자로서의 낙인이

⁴⁷⁾ Paternoster, Raymond and Lee Ann Iovanni, 1989, The labeling perspective and delinquency: An elaboration of the theory and an assessment of the evidence, Justice Quarterly 6: 379-94.

⁴⁸⁾ Becker, Howard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p.31.

⁴⁹⁾ Schur, Edwin M., 1965, Crimes Without Victim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p.4.

⁵⁰⁾ Lemert, Edwin M.,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40-41.

부여될 경우 지속적으로 범죄자나 일탈자로 남아 있거나 그 낙인으로 인 하여 더 심각한 범죄나 일탈행위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요약해 보면,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초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범죄행위가 어떻게 형사사법기관에 이해 인지되어 공식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가 하는 낙인과정에 관심을 가지 게 된다. 이 이론은 범죄자 개인들의 인종적,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낙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범죄자 혹은 전 과자로서의 낙인은 개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정체성을 받아들이게끔 하 고 이런 오명을 가진 사람들은 경력범죄자로 발전하게 된다.

낙인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개 누가 범죄자나 일탈자로 낙인찍히는가 하는 문제와 낙인의 결과 또 다른 범죄나 일탈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수민족이고 가난하고 파워가 없는 집단의 사람들이형사절차상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인지되고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인종(race)이 공식적 형사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51) 또 범죄를 처리하는 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비난받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의 피의자들의 경우 그들이무고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잘 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한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52)

⁵¹⁾ Pope, Carl and William Feyerherm, 1990, Minority status and juvenile justice processing, Criminal Justice Abstracts 22:327–36; Carl Pope, 1979, Race and crime revisited, Crime and Delinquency 25: 347–57.

⁵²⁾ Margolin, Leslie, 1992, Deviance on record: Techniques for labeling child abusers in official documents, Social Problems 39: 58-68.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특성과 같은 법적 요소에 따라 처리하지 않 고 사회계층이나 인종에 따라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낙인과정에 있어서 자의성은 매우 미미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결국에 가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흑인들에게는 경계 선상에 있을 경우 백인들의 경우보다 더 중한 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53) 또 소수민족인의 경우에 있어서 경계선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인종차별주의를 발견하 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범죄인 처리에 있어서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낙인의 결과는 어떠한가? 낙인이론에 따르면 낙인자체는 개인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 주장은 상당히 많은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54)

전과자로서의 낙인이 범죄행위의 지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들은 낙인은 범죄의 상습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55)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비행낙인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게끔 하여 반사회적 행위들을 반복하도록 한다는 점을 한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56) 또 부정적인 낙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시초의 범죄행

⁵³⁾ Walker, Samuel, Cassia Spohn, and Meriam DeLone, 1996, The Color of Justice, Race, Ethnicity and Crime in America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p. 145-146.

⁵⁴⁾ Kaplan, Howard and Robert Johnson, 1991, Negative social sanctions and juvenile delinquency: Effects of labeling in a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72: 98-122.

⁵⁵⁾ Tittle, Charles, 1988, Two empirical regularities (Maybe) in search of an explanation: Commentary on the age/crime debate, Criminology 26: 75-88.

⁵⁶⁾ Robert Sampson and John Laub, 1997,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ed. Terence Thornberry (New Brunswick, N.J.): 133-61.

위를 유도하지는 않지만 일단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지속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법집행에 있어서 하류층이나 소수 민족에 대해서 차별적이라는 낙인이론의 주장에 대해서 Welford는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인종, 계층, 범죄자의 행동 거지에 따른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비록 낙인이 범죄자의 자아상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낙인이나 오명(stigma) 같은 요소보다는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58) 따라서 낙인으로 인한 자아상의 변화, 이어서 범죄행위로의 연결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탐구해야 하는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이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논점들을 조사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할 것이다.

6. 수형자의 준법의식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나 의지, 법복종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볼 수 있다.59) 준법의식이 법준수에 대한 태도라고 본다면 이 태도가 과연 법준수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논의의 여지가 있다. 법률이나 법제도에 대한 일반적 태도나 혹은 구체적 상황에서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와 같은 태도가 과연 법준수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태도-행위의 일관성이 있는지

⁵⁷⁾ Douglas Smith and Robert Brame, 1994, On the initiation and continuation of delinquency, Criminology 4: 607–630.

⁵⁸⁾ Charles Welford, 1975, Labeling theory and criminology: An assessment, Social Problems 22: 335-47.

⁵⁹⁾ 연성진·최병각·기광도, 2000,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의식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1.

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논의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여기에서는 과연 준법의식이 수형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법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법규위반행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은, 법규준수보다 위반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인 정의(definition)를 갖게될 경우 법규를 어기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잘 나타나 있다.60) 사회학습이론은 반복되는 자극과 반응의 과정을 통해 범죄행위가 금전적 이익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기대될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형성된다고 본다. 범죄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강할 경우 범죄는 행위의 가능성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의 경우 이미 사회와 격리되어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쉬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서61) 논의하고 있는 사회와의 유대(bonds)의 정도와 범죄의 연결성에 대한 논의는일반인들의 경우보다는 설득력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인습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유대감의 정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미칠 수밖에 없다. 유대의 네 가지 요소인 애착(attachment), 관여(involvement), 전념(commitment), 신념(belief) 중에서 특히 애착, 전념, 신념 등은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전념(commitment)을 예로 든다면,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경우장래 직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법을 준수하려는 의지 즉 준법의식이 강할 것이다. 또 신념(belief)은 일반적이고도 통상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정으로서 특히 법과 사회규칙이도덕적으로 옳으며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을 말하는데,62) 이러한 신념이

⁶⁰⁾ Akers, Ronald L., 1997,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Los Angeles: Roxbury Publishing Company.

⁶¹⁾ Hirschi, Travis, 1997,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약해졌을 경우 법을 어길 확률이 높게 될 것이다.

수형자들의 준법의식이 이들이 받고 있는 형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한 인과관계 설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처벌로 인해 수형자가 처벌받기 전과 다른 법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의 조사를 통해 알기란 쉽지 않다. 다만 적어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처벌받고 있는 수형자들이 과연 일반인들과 다른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준법의식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가 처벌이나 범죄행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일반인의 준법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63)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고 또수형자들에게 있어서 준법의식의 개인적 차이가 향후 범죄의 가능성 등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⁶²⁾ 연성진·최병각·기광도, 2000,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의식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⁶³⁾ 연성진 외, 위의 글, p.23.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자의 특성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위해 전국의 초범 및 재범이상 13개 교도소를 선정하였다. 초범 과 재범이상의 수형자 비율이 전체교도소 수형자의 비율과 비슷하도록 하기 위해 초범교도소와 재범이상 각 교도소 대상 할당 표본수를 조정하였다.

<표 3-1>은 조사대상 교도소별 사례수를 보여준다. 전체 13개 교도소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각 교도소당 사례수는 약 60명에서 90명 정도로 하였으며 성실하지 않게 응답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분석은 943명 수형자들의 설문 응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3-1> 조사대상 교도소별 사례수

교도소명	빈도(%)
의전영부청대광여춘청안장강	69 (7.3) 80 (8.5) 84 (8.9) 86 (9.1) 61 (6.5) 73 (7.7) 60 (6.4) 76 (8.1) 88 (9.3) 75 (8.0) 67 (7.1) 59 (6.3) 65 (6.9)
<u></u> 합계	943 (100)

< 표 3-2>는 이들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283명(33.1%), 30대가 302명 (35.4%), 40대가 202명(23.7%), 50대 이상이 65명(7.6%)으로 나타나, 전체 적으로 볼 때 40대 이하의 연령층이 789명으로 92.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나 중퇴가 463명(49.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졸/중퇴가 186명(19.7%), 4년제 대학 졸업/중퇴 103명(10.9%)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입소 전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미혼이 444명(47.1%)으로 가장 많고, 결혼 282명(29.2%), 이혼 111명(11.8%), 기타 39명(4.1%), 별거 28명(3.0%), 사별 20명(2.1%)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수형자의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가 374명에 39.4%로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불교 222명(23.5%), 무종교 113명(12.0%), 기타 52명 (5.5%)의 분포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입소 전 연간 가구소득은 500만원 미만이 26.4%, 73.6%은 500만원 이 상인 것으로 응답했다.

입소 전 수형자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평균정도의 생활수준이었다고 응답한 수가 473명(50.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은 286명(30.3%), 높은 수준은 152명(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ш Д		기계소(~)
<u>변수</u>	구 분	사례수(%)
연 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 (0.2) 283 (33.1) 302 (35.4) 202 (23.7) 65 (7.6)
교 육 수 준	무 학 국졸 이하 중졸(퇴) 고졸(퇴) 전문대졸(퇴) 4년제졸(퇴) 대학원졸(재,퇴)이상	20 (2.1) 57 (6.0) 186 (19.7) 463 (49.1) 67 (7.1) 103 (10.9) 30 (3.2)
혼인 상태	ロ 혼 결 혼 사 별 이 혼 별 거 기 타	444 (47.1) 282 (29.9) 20 (2.1) 111 (11.8) 28 (3.0) 39 (4.1)
종 교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종 교 없 음 기 타	374 (39.4) 222 (23.5) 145 (15.4) 113 (12.0) 52 (5.5)
연간 가구 소득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183 (26.4) 64 (9.2) 70 (10.1) 86 (12.5) 36 (5.1) 105 (15.2) 12 (1.7) 38 (5.5) 44 (6.4) 55 (8.9)
입소전생활수준	대 우 높 다 약 간 높 다 평 균 이 다 약 간 낮 다 대 우 낮 다	42 (4.5) 110 (11.7) 473 (50.2) 154 (16.3) 132 (14.0)

조사대상 수형자의 범죄유형별 분포는 <표 3-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수형자의 범죄유형별 분포는 강도가 154명(17.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기·횡령·배임 151명(17.3%), 폭행·상해 129 명(14.8%), 절도 123명(14.4%), 살인 76명(8.7%)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3> 조사대상자의 범죄유형별 분포

변인	사례수
폭행·상해	129 (14.8)
절도	123 (14.4)
강도	154 (17.6)
성범죄	79 (9.0)
사기 • 횡령 • 배임	151 (17.3)
약물	41 (4.7)
교통사고	27 (3.1)
살인	76 (8.7)
살인미수	12 (1.4)
병역법	25 (2.9)
기타	54 (6.1)
전 체	874(100.0)

수형자의 교도소 입소횟수 및 복역횟수별 분포는 <표 3-4>와 같다. 입소횟수를 보면 질문에 응답한 수형자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45%가 처음 입소한 수형자이고 두 번째 입소가 19.9%, 3회가 13%, 나머지 20% 남짓한 수형자가 4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과횟수를 살펴보면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경우가 9.2%, 1회가 약 31%, 2회가 약 17%, 3회가 약 16%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조사대상들의 범죄경력별 분포

	1 110 = 1 1 1 1 1 0	1 = -
구	분	빈도(%)
	1회	373 (45.0)
	2회	165 (19.9)
	3회	108 (13.0)
	4회	74 (8.9)
	5회	47 (5.7)
입소 횟수	6회	23 (2.8)
	7회	19 (2.3)
	8회	7 (0.8)
	9회이상	13 (2.3)
	합 계	829 (100.0)
	0회	61 (9.2)
	1회	206 (31.1)
	2회	116 (17.5)
	3회	108 (16.3)
	4회	49 (7.4)
전과 횟수	5회	50 (7.6)
(본범 제외)	6회	26 (3.9)
, , , , , , , , , , , , , , , , , , , ,	7회	21 (3.2)
	8회	7 (1.1)
	9회	3 (0.5)
	10회이상	15 (2.2)
	합 계	662 (100.0)

제2절 주요 변인의 측정

1.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

억제이론에서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은 낮다고 본다.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폭행·상해 등 7가 지 범죄에 대해서 "귀하가 다음의 각 범죄에 대해서 같은 범죄를 연속해 서 두 번 행한다면, 귀하가 체포될 가능성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1)매우 높다에서 (4)매우 낮다의 4점 척도에 응답자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였다. 개인별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는 각문항의 Z점수를 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척도로서 "내가 법을 어긴다면 주위사람들에게 들킬 것이다" "내가 법을 어긴다면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다" "내가 법을 어긴다면 즉시 경찰에 파악될 것이다" "내가 법을 어긴다면 결국에는 경찰에 검거될 것이다" "내가 법을 어겨 검거된다면 처벌받을 것이다"의 여러 항목들을 별도로 이용하였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는 위에서 사용된 일곱 가지의 범죄에 대해서 "귀하가 다음의 각 범죄를 행해서 체포되었다면 처벌의 강도는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1)매우 높다에서 (4)매우 낮다의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낙인

낙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 범죄를 범한 이후의 상황이나 느낌을 여러개의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주변사람들과 일상적인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의여러 문항들에 대해서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대체로 아니다(4)전혀 아니다의 네 개 응답범주로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3. 향후 범죄의 가능성

기존의 연구들은 억제이론을 검증함에 있어서 미래 범죄행위의 가능성

을 질문하고 처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⁶⁴⁾ 이 연구에서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귀하는 출소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향후 범죄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이출소 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도 포함시킴으로써본인과 타인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응답범주는 (1) 매우 낮다에서 (5) 매우 높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4. 법에 대한 태도

법에 대한 태도들은 법을 어기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측정해 보았다. 먼저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큰 것 같다"의 세 문항을 이용하였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이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것들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 항목들은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가장 낫다," "법보다는 상식이나 관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법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법보다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의다섯 가지 문항을 포함하였다.

⁶⁴⁾ 예컨대, Grasmick et al. (1993a)과 연성진·김지선(1998)을 들 수 있다.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법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응답범주는 질서유 지, 인권유지, 사회정의, 분쟁해결의 네 가지이다.

준법의식의 측정은 "귀하께서는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1)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의 두 가지 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더 이상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정교화가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교정시설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수형자들은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에는 교도소 내 규칙이 합리적인가, 교도소 내 생활수칙이나 규율적용이 합리적인가, 나는 수형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수형생활은 내게 매우 고통스러운가, 수형생활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 교도관들이 수형자 대하는 태도가 공정한가,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해서 만족한다 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질문들에 대해서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대체로 아니다 (4) 전혀 아니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 기타 통제 변인들

범죄원인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에서 중요한 변인들로 추출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상대적 박탈감 등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Felson과 Steadman(1983)과 Felson과 Messner(2000)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⁵⁵⁾ 여기에 포함된 문항들은 "대체로 나는 나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나에게는 자랑할만한 것이 많지 않다" 등 네 개이다.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Grasmick et al.(1993)가 개발한 척도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그 항목들은 "나는 당장 재미있다면 그 일부터 하는 편이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두는 편이다," "나는 모험적이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일을 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쉽게 화를 내는 편이다" 등이 사용되었다.

상대적 박탈감은 Felson과 Messner(2000)의 연구와 연성진(200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6개의 항목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항목들은 "현재의 여건상 내가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편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면 억울함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운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못하는 것 같다"의 6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적 변인들이다.

⁶⁵⁾ 연성진. 1998.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최병각·기광 도, 2000.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4장 분석결과

전국의 13개 교도소 수형자 943명을 대상으로 행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 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형자들이 받고 있는 형벌이나 법, 범죄 혹은 향후 범죄가능성 등에 대한태도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들은 결국 처벌이 범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처벌과 범죄의 관련성은 반드시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어느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를 통해서 모든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는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 있어서 특히 억제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한계들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연구에서도 횡단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쉽게 극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또 필요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도록 할 것이다.

이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수형자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형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본다. 이들이 수형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는 장래 출소한 후사회적응이나 향후 재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후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적응정도와 범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처벌의 범죄억제효과, 처벌의 낙인효과, 그리고 범죄자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1절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입소횟수가 2회 이상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번 수용되었을 때 받은 프로그램의 종류와 또 받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질문하였다. 복수응답을 가능토록 했을 때,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응답자들이 받은 교정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정신교육 360명(38.2%), 종교 활동 247명(26.2%)으로 주로 수형자의 정신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기술교육으로 전체의 14.3%인 135명이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받은 교정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이 175명(18.6%), 정신교육이 165명(17.5%), 기술교육 102명 (10.8%)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교정프로그램의 종류

빈도(%)

교정프로그램	받은 프로그램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학과교육	89 (9.4)	54 (5.7)
수형자 정신교육	360 (38.2)	165 (17.5)
기술 교육	135 (14.3)	102 (10.8)
귀휴	20 (2.1)	41 (4.3)
사회견학	55 (5.8)	59 (6.3)
합동접견	77 (8.2)	64 (6.8)
외부통근작업	51 (5.4)	58 (6.2)
복지담당관제	21 (2.2)	18 (1.9)
종교활동	247 (26.2)	175 (18.6)
교화종교위원제도	34 (3.6)	42 (4.5)

수형자들이 맨 처음 범죄를 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우연하게 저지르게 되었다는 응답이 270명으로 전체의 29.5%나 되었고 그 다음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친구에 끌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15.1%와 15.0%로 그 뒤를 이었고, 기타 격정에 휩싸여서,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표 4-2>).

<표 4-2> 범죄의 동기

빈도(%)

				[(/0/
범죄원인의 요인	전혀중요 하지않음	중요하지 않음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빚이 많아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로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직장을 잃어서 재미있어서 생활수준을 높이기위해 돈이 필요해서 친구가 하자고 해서	301 (33.3) 331 (36.4) 306 (34.1) 489 (54.4) 372 (40.8) 594 (65.9) 383 (42.7)		276 (30.5) 263 (27.9) 244 (27.2) 138 (15.4) 245 (26.9) 102 (11.3) 245 (27.3)	184 (20.4) 165 (18.1) 208 (23.2) 84 (9.3) 115 (12.2) 26 (2.9) 89 (9.9) 49 (5.5)
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서 먹고 살기위해 돈이 필요해서 강한 긴장과 초조감 때문에 흥분해서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라고 시켜서 피해자가 미워서 사회가 싫어서	640 (71.7) 361 (40.6) 530 (59.2) 467 (52.2) 616 (69.5) 401 (44.9) 609 (68.8) 571 (63.7)	119 (13.3) 147 (16.5) 208 (23.2) 179 (20.0) 127 (14.3) 138 (15.5) 155 (17.5) 143 (15.9) 159 (17.7)	99 (11.1) 241 (27.1) 112 (12.5) 180 (20.1) 82 (9.3) 192 (21.5) 82 (9.3) 128 (14.3)	35 (3.9) 141 (15.8) 46 (5.1) 68 (7.6) 61 (6.9) 162 (18.1) 39 (4.4) 55 (6.1) 85 (9.5)

<표 4-2>와 관련되는 질문과 관련하여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형자들에게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실업이 460명(50.9%),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452명(50.4%), 빚 등 재정문 제가 428명(46.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이 단연 많은 것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생계유지문제가 382명(42.9%)으로 역시 경제적 문제가 수형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복수나 흥분, 약물 등은 범죄의 동기로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표 4-3> 면회수

빈도(%)

면회수	빈도수(%)
한달에 두 번이상	393 (42.2%)
한달에 한번정도	235 (25.2%)
두세달에 한번정도	136 (14.6%)
6개월에 한번정도	62 (6.7%)
1년에 한번정도	35 (3.8%)
거의 면회하지 않음	70 (7.5%)

가족·친지 기타 사람들과의 면회수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3>과 같다. 가족 등과의 면회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이 628명(77.4%)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한달에 한번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의 약 2/3가 한달에 한번이상 면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편지 교환수

빈도(%)

편지 교환수	빈도수(%)
일주일에 두 번이상	210 (22.6%)
일주일에 한 번정도	214 (23.1%)
한달에 한두 번이상	288 (31.0%)
두세달에 한 번정도	87 (9.4%)
6개월에 한 번정도	44 (4.7%)
1년에 한 번정도	42 (4.5%)
한번도 편지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	43 (4.6%)

가족·친지, 기타사람과의 편지교환수를 물었을 때,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가족 등과 편지교환 횟수에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이 210명(22.6%),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14명(23.1%)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면회수보다도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달을 기준으로 하여 한 두 번 이상 편지를 교환하는 전체 수형자의 수가 712명(76.7%)으로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가족 등과 편지교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

빈도(%)

수형생활일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소내 생활수칙이나 규칙은 합리적이다	129 (13.8)	437 (46.6)	228 (24.3)	143 (15.3)
소내 생활수칙이나 규율은 공정하게 적용된다	94 (10.0)	356 (38.0)	290 (31.0)	196 (20.9)
나는 수형생활에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	227 (24.3)	580 (62.0)	86 (9.2)	42 (4.5)
수형생활은 내게 매우 고통스럽다	158 (17.0)	284 (30.5)	349 (37.4)	141 (15.1)
수형생활을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327 (35.0)	364 (39.0)	139 (14.9)	104 (11.1)

수형생활전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5>와 같다. 교도소 내 생활수칙이나 규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형자는 566명 (60.4%)으로 비교적 수형규칙의 합리성에 긍정적이었으나, 수칙·규율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51.9%인 468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생활에 대한 적응에서는 86.3%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으며, 52.5%가 수형생활이 괴롭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적응도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형생활이 재범방지를 위한 그 유용도 측면에서도, 응답자의 74% 인 691명이 수형생활을 통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해 일견 처벌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응답하고 있다.

<표 4-6> 교도관에 대한 태도

빈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대하는 태도가 공정하다	98 (10.5)	411 (43.9)	238 (25.4)	190 (20.1)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사 항에 대해 적절히 잘 처리해준다	88 (9.4)	405 (53.1)	293 (31.2)	153 (16.3)

수형자들이 교도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교도관이 수형자를 대하는 태도가 공정한지의 여부에 관해 509명 (54.4%)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수형자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의 해결에 관해서는 493명(62.5%)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교도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

빈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수형생활 중 병에 걸리거나 아플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72 (7.7)	283 (30.1)	364 (38.8)	220 (23.4)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수가 적절하 다고 생각한다	33 (3.5)	175 (18.7)	268 (28.6)	461 (49.2)
교도소 내 작업장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48 (5.2)	244 (26.4)	318 (34.5)	313 (33.9)

다음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수형자들을 위한 적절한 교정시설이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표 4-7>과 같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이나 치료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62.2%인 584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거실 공간에의 과다수용에 관해 729명(77.8%), 작업장이나 직업훈련시설의 미비에 대해서는 68.4%인 63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수형자들은 전반적으로 교정시설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만족이 과연 출소 후 사회적응과 범죄가능성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후에 살펴볼 것이다.

<표 4-8> 소내 작업/직업훈련의 만족도

빈도(%)

소내작업.직업훈련소 만족도	매우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교도소의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 에 대해서 만족한다	64 (6.9)	251 (26.9)	314 (33.6)	305 (32.7)

교도소 내의 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표 4-8>의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의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는 응답자의 76.3%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엄벌의 범죄억제효과

빈도(%)

엄벌의 범죄억제효과	매우	대체로	대체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 하는 것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134 (14.3)	228 (24.4)	260 (27.8)	314 (33.5)

마지막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수형자들의 응답분포는 <표 4-9>와 같다. 수형자들은 엄벌을 통한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61.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처벌의 범죄억제효과

처벌이 과연 개인의 범죄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처벌에 대한 확실성 혹은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향후 범죄가능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로, 처 벌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혹은 범죄억제효과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전과수 혹은 복역횟수가 과연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처벌의 확실성 혹은 엄격성의 지표로서, 1) 같은 범죄를 연속해서 두 번 행했을때 처벌받을 가능성을 묻는 문항과 2) 단일 항목들로 구성된 일련의 문항들(예를 들어, 내가 법을 어긴다면 결국 경찰에 검거될 것이다)을 차례로 이용할 것이다.

가. 처벌에 대한 태도

먼저, 공식적 및 사회적 억제력, 수치심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일반인들과 수형자들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인들보다 수형자들에게 있어서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들의 응답에 대한 조사결과는 2000년도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66) <표 4-10>을 보면, 법을 어겼을 경우 주위사람들에게 쉽게 들킬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수형자들의 25.3%가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일반인들의 경우 단지 17.5%만이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 수형자들이 범죄의 적발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비율을 합할 경우, 수형자의 약 4분의 3인 75.7%, 일반인의 73.8%가 같은 범주에 응답을 하고 있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적발가능성을 보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확실성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처벌경험이 있는 수형자들이 더 강한 적발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을 어길 경우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수형자의 20.7%가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의

⁶⁶⁾ 연성진 외, 2000,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1.7%만이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수형자들의 처벌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범주를 합할 경우, 수형자의 67.9%, 일반인의 53.8%가 각각신고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법을 어길 경우, 경찰에 파악될 가능성, 경찰에 즉시 검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형자들이일반인들보다 처벌가능성을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어길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묻는 두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수형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법을 어길 경우 가족들의 실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역시수형자들이 가족들의 실망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8.3%의 수형자들이 가족들이 확실히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의 48.1%가 같은 범주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들이 처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 등에 있어서 초래되는 손실에 대해서 수형자의 50.3%가 확실히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의 40.9%가 같은 범주에 응답하고 있다. 한편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응답 범주를 합할경우 역시 수형자들이 불이익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정도가 일반인들에비해서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의 처벌로 인한 수치심에 대해서 수치심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항목역시 일반인들보다 수형자들이 처벌에 대한 수치심의 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어길 경우 발각되지 않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서 36.5%가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3.9%의 일반인들이 같은 범주에 응답하고 있고, 체면손상을 느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형자의 30.9%가, 일반인의 28.2%가 확실히 그렇다고 느끼고 있었다.한편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두 범주를 더할 경우 수형자와

70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일반인들은 비슷한 범주로 확실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표 4-10> 공식적 및 사회적 억제력, 수치심에 대한 태도 빈도(%)

1	-, , ,	" 1, 1 1	ш-и -и <u>с</u>	"	U-1/0/
공식적 및 사회적 억제력,	구분	확실히	대체로	대체로	전혀
수치심에 대한 태도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법을 어긴다면, 주위	수형자	238 (25.3)	474 (50.4)	188 (20.0)	41 (4.4)
사람들에게 쉽게 들킬 것이다	일반인	196 (17.5)	629 (56.3)	266 (23.8)	27 (2.4)
내가 법을 어긴다면,	수형자	195 (20.7)	444 (47.2)	250 (26.6)	51 (5.4)
누군가 신고할 것이다	일반인	131 (11.7)	471 (42.1)	460 (41.1)	56 (5.0)
내가 법을 어긴다면,	수형자	162 (17.3)	363 (38.8)	346 (37.0)	65 (6.9)
즉시 경찰에 파악될 것이다	일반인	130 (11.6)	448 (40.1)	460 (41.1)	80 (7.2)
내가 법을 어긴다면, 결국에는	수형자	274 (29.3)	451 (48.2)	173 (18.5)	38 (4.1)
경찰에 검거될 것이다	일반인	208 (18.6)	555 (49.3)	286 (25.6)	69 (6.2)
내가 법을 어겨 검거된다면,	수형자	421 (44.9)	428 (45.7)	59 (6.3)	29 (3.1)
처벌받을 것이다	일반인	419 (37.5)	551 (49.3)	124 (11.1)	23 (2.1)
내가 법을 어겨 처벌된다면, 가족들은 상당히 실망할 것이다	수형자 일반인	643 (68.3) 538 (48.1)	239 (25.4) 466 (41.7)	38 (4.0) 97 (8.7)	22 (2.3) 16 (1.4)
내가 법을 어겨 처벌된다면, 주위사람들은 나를 멀리할 것이다	수형자 일반인	327 (34.8) 308 (27.5)	382 (40.6) 504 (45.1)	192 (20.4) 263 (23.5)	39 (4.1) 40 (3.6)
내가 법을 어겨 처벌된다면, 장래에 직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수형자 일반인	473 (50.3) 457 (40.9)	347 (36.9) 494 (44.2)	76 (8.1) 146 (13.1)	45 (4.8) 19(1.7)
내가 법을 어긴다면, 발각되지 않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수형자 일반인	344 (36.5) 379 (33.9)	441 (46.8) 542 (48.5)	123 (13.0) 170 (15.2)	35 (3.7) 24(2.1)
내가 법을 어긴다면, 발각되지 않더라도 체면손상을 느낄 것이다	수형자 일반인	291 (30.9) 315 (28.2)	472 (50.2) 603 (53.9)	133 (14.1) 169 (15.1)	45 (4.8) 28 (2.5)

다음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해서 7개 범주의 범죄에 대해서 같은 범죄를 두 번 연속해서 행한다면 체포될 가능성과 처벌의 강도를 질문하였다.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70% 정도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4-11>과 <표 4-12>).

<표 4-11>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

빈도(%)

처벌의 확실성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폭행·상해 침입절도	143 (16.3) 193 (22.6)	116 (13.2) 144 (16.9)	243 (27.6) 209 (24.5)	377 (42.9) 307 (36.0)
절도	207 (24.0)	136 (15.8)	213 (24.7)	305 (35.4)
강도 성범죄	196 (23.0)	94 (11.0)	200 (23.5)	362 (42.5)
성립죄 사기·횡령	200 (23.4) 199 (22.8)	119 (13.9) 134 (15.3)	173 (20.2) 216 (22.9)	364 (42.5) 325 (37.2)
약물범죄	252 (29.5)	96 (11.2)	171 (20.0)	335 (39.2)

<표 4-12>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

빈도(%)

처벌의 엄격성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폭행·상해 침입절도 절도 강도 성범죄 사기·횟령	92 (10.5) 142 (16.7) 156 (18.2) 131 (15.5) 142 (16.7) 199 (22.9)	161 (18.4) 194 (22.8) 208 (24.2) 73 (8.6) 84 (9.9) 194 (22.3)	333 (38.0) 305 (35.8) 282 (32.9) 270 (31.9) 263 (30.9) 262 (30.1)	290 (33.1) 211 (24.8) 212 (24.7) 373 (44.0) 363 (42.6)
사기·청성 약물범죄	220 (25.7)	183 (21.4)	228 (26.6)	215 (24.7) 225 (26.3)

마지막으로, <표 4-13>을 보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향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5.1%가 매우 높다고 응답하고 42.1%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서 67.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본인의 출소 후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5.8%가 매우 높다, 12.1%

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이 두 응답을 합하면 단지 17.9%만이 출소후 범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답하였다. 이 수치는 다른 출소자들의 범죄가능성이 67.2%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낮게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로 본인의 경우 재범가능성을 거짓으로 낮게 응답하였다고볼 수 있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표 4-13> 향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

нÌ	-	(0/)
ы	<u>ب</u>	(%)

	매우	낮은	보통	높은	매우
	낮다	편이다	이다	편이다	높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	41	58	209	395	236
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4.4)	(6.2)	(22.3)	(42.1)	(25.1)
출소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391	189	190	113	54
때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41.7)	(20.2)	(20.3)	(12.1)	(5.8)

나. 처벌의 확실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는 같은 범죄를 연속해서 두 번 행할 경우체포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폭행·상해를 비롯한 7개 범죄에 대해서, 매우 낮다(1)에서 매우 높다(4)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각의 표준점수의 합으로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 표 4-14>의 교차분석결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다고 느낄수록 본인의 향후 범죄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본인의 범죄가 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기 힘들다면 타인의 범죄가능 성과 처벌의 확실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5>는 역시 범죄에 대한 처벌확실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타인의 출소 후 범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4> 처벌의 확실성과 본인의 향후 범죄가능성 빈도(%)

				본인의 향후	보 범죄가능성		
구	분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 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합 계
	1	68(39.3)	45(26.0)	32(18.5)	20(11.6)	8(4.6)	173(100.0)
	2	43(27.7)	33(21.3)	40(25.8)	30(19.4)	9(5.8)	155(100.0)
처벌의 확실성	3	58(39.2)	27(18.2)	35(23.6)	22(14.9)	6(4.1)	148(100.0)
확결성	4	58(38.4)	33(21.9)	34(22.5)	19(12.6)	7(4.6)	151(100.0)
	5	119(57.2)	33(15.9)	26(12.5)	13(6.3)	17(8.2)	208(100.0)
	합 계	346(41.4)	171(20.5)	167(20.0)	104(12.5)	47(5.6)	835(100.0)

^{*} chi-square=52.415, df=16, p=.000

<표 4-15> 처벌의 확실성과 타인의 출소 후 범죄가능성 빈도(%)

		타인의 향후 범죄가능성								
구	구 분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합 계			
	1	9(5.2)	13(7.5)	39(22.5)	72(41.6)	40(23.1)	173(100.0)			
	2	2(1.3)	4(2.6)	28(18.1)	79(51.0)	42(27.1)	155(100.0)			
처벌의	3	3(2.0)	5(3.4)	35(23.5)	71(47.7)	35(23.5)	149(100.0)			
확실성	4	5(3.3)	9(6.0)	37(24.5)	61(40.4)	39(25.8)	151(100.0)			
	5	15(7.2)	19(9.1)	53(25.5)	65(31.3)	56(26.9)	208(100.0)			
	합 계	34(4.1)	50(6.0)	192(23.0)	348(41.6)	212(25.4)	836(100.0)			

^{*} chi-square=32.463, df=16, p=.009

이제 처벌의 공식적, 비공식적 측면과 범죄억제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질문했지만, 이제는 처벌의 확실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법을 어겼을 때의 적발가능성과 처벌받을 가능성을 묻는 5개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사회적 비용은 법을 어길 경우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또 직업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치심은 발각되지 않더라도 수치심이나 체면손상을 어느 정도느낄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 사회적 비용, 직업에서의 불이익, 수치심의 정도가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 토해보기로 한다.

<표 4-16> 주위사람에게 들킬 가능성

빈도(%)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17	7	9	2	5	40
	그렇지않다	(42.5)	(17.5)	(22.5)	(5.0)	(12.5)	(100.0)
주위사람	그렇지	62	44	34	32	16	188
	않은편이다	(33.0)	(23.4)	(18.1)	(17.0)	(8.5)	(100.0)
에게 들킬	그런	186	111	101	52	21	471
가능성	편이다	(39.5)	(23.6)	(21.4)	(11.0)	(4.5)	(100.0)
	확실히	126	26	46	27	12	237
	그렇다	(53.2)	(11.0)	(19.4)	(11.4)	(5.1)	(100.0)
	합 계	391 (41.8)	188 (20.1)	190 (20.3)	113 (12.1)	54 (5.8)	936 (100.0)

^{*} chi-square=39.366, df=12, p=.000

<표 4-16>은 범죄를 행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들킬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범죄를 행한 후 주위사람들에게 들킬 가능성이 많다고 본 수형자들이 대 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차분석 결과는 법을 어길 경우 적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본인이 출소 후 범죄를 저지 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

빈도(%)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21	11	6	4	8	50
	그렇지않다	(42.0)	(22.0)	(12.0)	(8.0)	(16.0)	(100.0)
누군가가	그렇지	106	58	41	32	12	249
	않은편이다	(42.6)	(23.3)	(16.5)	(12.9)	(4.8)	(100.0)
신고할	그런	168	90	105	52	26	441
가능성	편이다	(38.1)	(20.4)	(23.8)	(11.8)	(5.9)	(100.0)
	확실히	95	29	38	24	8	194
	그렇다	(49.0)	(14.9)	(19.6)	(12.4)	(4.1)	(100.0)
	합 계	390 (41.8)	188 (20.1)	190 (20.3)	112 (12.0)	54 (5.8)	934 (100.0)

^{*} chi-square=25.299, df=12, p=.014

<표 4-17>은 법을 어긴다면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과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전체응답 분포를 보면 법을 어길 경우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형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결과는 수형자들이 본인이 법을 어겼을 경우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치를 살펴볼 때, chi-square=25.299는 alpha=.05 수준에서유의미한 것을 보여준다.

<표 4-18> 경찰에 즉시 파악될 가능성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그렇지않다	29 (45.3)	9 (14.1)	13 (20.3)	7 (10.9)	6 (9.4)	64 (100.0)
경찰에 즉시	그렇지 않은편이다	128 (37.2)	85 (24.7)	63 (18.3)	46 (13.4)	22 (6.4)	344 (100.0)
파악될 가능성	그런 편이다	154 (42.5)	75 (20.7)	77 (21.3)	40 (11.0)	16 (4.4)	362 (100.0)
	확실히 그렇다	78 (48.4)	20 (12.4)	34 (21.1)	19 (11.8)	10 (6.2)	161 (100.0)
	합 계	389 (41.8)	189 (20.3)	187 (20.1)	112 (12.0)	54 (5.8)	931 (100.0)

^{*} chi-square=17.757, df=12, p=.123

<표 4-18>은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발가능성과 향후 범죄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이 교차분석 결과는 경찰의 적발가능성과 출소 후 범죄가능성 사이에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표의 결과를 <표 4-19>와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이 문항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후 "즉시" 파악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19>는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과 향후 범죄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9>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13	3	12	6	4	38
	그렇지않다	(34.2)	(7.9)	(31.6)	(15.8)	(10.5)	(100.0)
경찰에	그렇지	62	43	35	20	13	173
	않은편이다	(35.8)	(24.9)	(20.2)	(11.6)	(7.5)	(100.0)
검거될	그런	175	103	96	53	20	447
가능성	편이다	(39.1)	(23.0)	(21.5)	(11.9)	(4.5)	(100.0)
	확실히	140	39	45	31	17	272
	그렇다	(51.5)	(14.3)	(16.5)	(11.4)	(6.3)	(100.0)
	합 계	390 (41.9)	188 (20.2)	188 (20.2)	110 (11.8)	54 (5.8)	930 (100.0)

^{*} chi-square=28.845, df=12, p=.004

<표 4-20>은 법을 어겨 검거되었을 경우 처벌받을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와 출소 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검거되었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결과는 처벌의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통계적으로 alpha=.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0> 검거되었을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12	3	8	3	3	29
	그렇지않다	(41.4)	(10.3)	(27.6)	(10.3)	(10.3)	(100.0)
검거되었을	그렇지	17	14	14	6	8	59
경우	않은편이다	(28.8)	(23.7)	(23.7)	(10.2)	(13.6)	(100.0)
처벌받을	그런	170	101	85	54	14	424
가능성	편이다	(40.1)	(23.8)	(20.0)	(12.7)	(3.3)	(100.0)
	확실히	192	69	81	49	29	420
	그렇다	(45.7)	(16.4)	(19.3)	(11.7)	(6.9)	(100.0)
	합 계	391 (42.0)	187 (20.1)	188 (20.2)	112 (12.0)	54 (5.8)	932 (100.0)

^{*} chi-square=26.108, df=12, p=.010

지금까지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5개 문항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경찰의 적발가능성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들이 향후 범죄가능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어겼을 경우에 따르는 처벌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가 클수록 출소 후 범죄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범죄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 기로 하자. 사회적 비용은 처벌될 경우 가족들의 실망, 주위사람들의 외면, 직업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 세 개의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그렇지않다	4 (18.2)	2 (9.1)	9 (40.9)	2 (9.1)	5 (22.7)	22 (100.0)
처벌될 경우	그렇지 않은편이다	8 (21.1)	16 (42.1)	6 (15.8)	4 (10.5)	4 (10.5)	38 (100.0)
가족들의 실망	그런 편이다	67 (28.4)	53 (22.5)	62 (26.3)	40 (16.9)	14 (5.9)	236 (100.0)
	확실히 그렇다	312 (48.8)	118 (18.4)	112 (17.5)	67 (10.5)	31 (4.8)	640 (100.0)
	합 계	391 (41.8)	189 (20.2)	189 (20.2)	113 (12.1)	54 (5.8)	936 (100.0)

^{*} chi-square=67.693, df=12, p=.000

<표 4-21>은 처벌될 경우 가족들의 실망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먼저 응답자의 93.5%가 처벌될 경우 가족들이 실망하게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결과는 가족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비용이 클수록 범죄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4-22>는 응답자의 약 75%가 본인이 처벌될 경우 주위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 수치는 가족들의 실망에 대한 비율 93.5%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는 처벌될 경우 주위사람들이 외면하는 경향이 클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가족들의 실망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라는 점에서 볼 때,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이 두 표는 보여주고 있다.

<표 4-22> 처벌될 경우 주위사람들의 외면

				범죄기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그렇지않다	16 (41.0)	6 (15.4)	6 (15.4)	5 (12.8)	6 (15.4)	39 (100.0)
처벌될	그렇지 않은편이다	86 (45.0)	45 (23.6)	35 (18.3)	19 (9.9)	6 (3.1)	191 (100.0)
경우 주위사람들 의 외면	그런 편이다	135 (35.5)	82 (21.6)	94 (24.7)	53 (13.9)	16 (4.2)	380 (100.0)
, , ,	확실히 그렇다	152 (46.8)	56 (17.2)	55 (16.9)	36 (11.1)	26 (8.0)	325 (100.0)
	합 계	389 (41.6)	189 (20.2)	190 (20.3)	113 (12.1)	54 (5.8)	935 (100.0)

^{*} chi-square=30.602, df=12, p=.002

<표 4-23> 처벌될 경우 장래 직업 등의 불이익

빈도(%)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16	7	8	4	10	45
	그렇지않다	(35.6)	(15.6)	(17.8)	(8.9)	(22.2)	(100.0)
처벌될	그렇지	32	16	13	12	2	75
	않은편이다	(42.7)	(21.3)	(17.3)	(16.0)	(2.7)	(100.0)
경우 장래	그런	129	85	79	41	11	345
직업 등의	편이다	(37.4)	(24.6)	(22.9)	(11.9)	(3.2)	(100.0)
불이익	확실히	213	81	89	56	31	470
	그렇다	(45.3)	(17.2)	(18.9)	(11.9)	(6.6)	(100.0)
	합 계	390 (41.7)	189 (20.2)	189 (20.2)	113 (12.1)	54 (5.8)	935 (100.0)

^{*} chi-square=39.651, df=12, p=.000

<표 4-23>은 처벌될 경우 장래 직업 등에 있어서의 손실과 향후 범죄

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85%가 범죄로 인한 직업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직업상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두 표는 수치심과 향후 범죄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내가 법을 어긴다면 발각되지 않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라는 문항과 출소 후 범죄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는 수치심을 느낄수록 범죄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4>는 법을 어긴다면 발각되지 않더라도 체면손상을 느낄 것이라는 문항과 범죄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체면손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 이 두 표의 분석결과를 통해 수치심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4> 발각되지 않더라도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 빈도(%)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그렇지않다	12 (34.3)	7 (20.0)	9 (25.7)	3 (8.6)	4 (11.4)	35 (100.0)
수치심을	그렇지 않은편이다	33 (27.0)	23 (18.9)	35 (28.7)	24 (19.7)	7 (5.7)	122 (100.0)
느끼는 정도	그런 편이다	164 (37.4)	102 (23.2)	94 (21.4)	57 (13.0)	22 (5.0)	439 (100.0)
	확실히 그렇다	182 (53.4)	57 (16.7)	52 (15.2)	29 (8.5)	21 (6.2)	341 (100.0)
	합 계	391 (41.7)	189 (20.2)	190 (20.3)	113 (12.1)	54 (5.8)	937 (100.0)

^{*} chi-square=45.891, df=12, p=.000

<표 4-25> 발각되지 않더라도 체면손상을 느끼는 정도 빈도(%)

		. 50			. – •		C (, 0,
				범죄가	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그렇지않다	14 (31.1)	13 (28.9)	10 (22.2)	4 (8.9)	4 (8.9)	45 (100.0)
체면	그렇지 않은편이다	39 (29.3)	25 (18.8)	36 (27.1)	22 (16.5)	11 (8.3)	133 (100.0)
손상을 느끼는 정도	그런 편이다	179 (38.1)	105 (22.3)	101 (21.5)	66 (14.0)	19 (4.0)	470 (100.0)
0-4-	확실히 그렇다	159 (55.2)	46 (16.0)	42 (14.6)	21 (7.3)	20 (6.9)	288 (100.0)
	합 계	391 (41.8)	189 (20.2)	189 (20.2)	113 (12.1)	54 (5.8)	936 (100.0)

^{*} chi-square=48.508, df=12, p=.000

요약해 보면,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사회적 비용, 직업적 불이익, 수치심 등 여러 가지 처벌 관련 요소들은 범죄를 행하지 않게 하는 억제효과가 있음이 일련의 교차분석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처벌관련 요인들과 범죄가 과연 어떤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형자 대상 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 결과는 뒤에서 보여줄 회귀분석과 같은 다변인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기본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처벌의 경험에 따른 범죄억제 효과

이제 처벌의 경험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처벌횟수와 향후 범죄가능성

억제이론에 있어서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 가설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할수록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처벌의 특별억제 효과보다는 처벌의 오명이나 다른 이유들로 인한 범죄가능성의 증가를 보 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연 처벌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향후 범죄가능성 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처벌의 경험에 따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현재의 입소를 포함한 복역수에 따른 향후 범죄가능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면(<표 4-26>), 복역수가 많은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이 결과는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범죄가능성은 증가하고, 실제로 처벌이 범죄억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6> 복역수에 따른 향후 범죄가능성

			범죄가능성						
	•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1	210(56.8)	66(17.8)	49(13.2)	25(6.8)	20(5.4)	370(100.0)		
	2	61(37.0)	38(23.0)	45(27.3)	17(10.3)	4(2.4)	165(100.0)		
	3	35(32.4)	18(16.7)	25(23.1)	19(17.6)	11(10.2)	108(100.0)		
복역수	4	18(24.7)	11(15.1)	23(31.5)	15(20.5)	6(8.2)	73(100.0)		
寺門下	5	8(17.0)	13(27.7)	16(34.0)	7(14.9)	3(6.4)	47(100.0)		
	6	4(18.2)	5(22.7)	5(22.7)	6(27.3)	2(9.1)	22(100.0)		
	7	7(18.4)	9(23.7)	8(21.1)	12(31.6)	2(5.3)	38(100.0)		
	합 계	343(41.7)	160(19.4)	171(20.8)	101(12.3)	48(5.8)	823(100.0)		

^{*} chi-square=109.885, df=24, p=.000

다음으로, 전과수가 범죄가능성과 과연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27>의 분석결과는 복역횟수와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전과가 많을수록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단순히 교도소 입소 경험뿐만 아니라 전과자라는 공식적인 낙인 자체도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7> 전과수에 따른 범죄가능성

빈도(%)

			범죄가능성						
	•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0	39(63.9)	8(13.1)	7(11.5)	6(9.8)	1(1.6)	61(100.0)		
	1	94(45.9)	41(20.0)	38(18.5)	24(11.7)	8(3.9)	205(100.0)		
	2	41(35.3)	24(20.7)	32(27.6)	13(11.2)	6(5.2)	116(100.0)		
	3	34(31.8)	23(21.5)	23(21.5)	16(15.0)	11(10.3)	107(100.0)		
전과수	4	11(22.4)	10(20.4)	20(40.8)	5(10.2)	3(6.1)	49(100.0)		
	5	14(28.6)	8(16.3)	14(28.6)	11(22.4)	2(4.1)	49(100.0)		
	6	4(15.4)	7(26.9)	3(11.5)	7(26.9)	5(19.2)	26(100.0)		
	7	8(17.4)	13(28.3)	9(19.6)	13(28.3)	3(6.5)	46(100.0)		
	합 계	245(37.2)	134(20.3)	146(22.2)	95(14.4)	39(5.9)	659(100.0)		

^{*} chi-square=78.308, df=28, p=.000

2) 처벌횟수와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

처벌을 받은 횟수와 범죄억제효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벌에 대한 인지는 곧 미래 범죄가능성을 예견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을 경험한 개인이 처벌의 억제효 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억제이론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금을 통해 무력화 기제가 작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범죄율을 감소시키지만 구금횟수가 많을수록 석방 후 죄를 지어 다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와는다른 어떤 기제가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 대 낙인효과가 오히려 범죄억제효과보다 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처벌횟수가 과연 형벌의 범죄억제기능을 담당하는 지 수형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먼저 각 범죄별로 처벌 확실성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각 범죄별로 나누어서 복역횟수와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28>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폭행-상해)

빈도(%)

				폭행,상해		
	-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1	63(17.9)	34(9.7)	85(24.1)	170(48.3)	352(100.0)
	2	21(13.7)	23(15.0)	43(28.1)	66(43.1)	153(100.0)
	3	16(16.3)	13(13.3)	36(36.7)	33(33.7)	98(100.0)
비선스	4	11(16.2)	10(14.7)	18(26.5)	29(42.6)	68(100.0)
복역수	5	8(18.2)	5(11.4)	14(31.8)	17(38.6)	44(100.0)
	6	3(13.6)	6(27.3)	5(22.7)	8(36.4)	22(100.0)
	7	7(20.0)	3(8.6)	12(34.3)	13(37.1)	35(100.0)
	합 계	129(16.7)	94(12.2)	213(27.6)	336(43.5)	772(100.0)

^{*} chi-square=19.808, df=18, p=.344

먼저 조사결과, 폭행·상해에 대해서 약 70%의 응답자들이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9). 그러나 교차분석결

과는 통계적으로 볼 때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 사이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4-29>는 침입절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약 60%가 침입절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폭행·상해와는 달리 침입절도에 있어서는 복역수가 처벌의 확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복역수가 많을수록 처벌의 확실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표 4-29>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침입절도)

				침입절도		
	_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1	72(21.1)	36(10.6)	83(24.3)	150(44.0)	341(100.0)
	2	34(22.5)	28(18.5)	35(23.2)	54(35.8)	151(100.0)
	3	25(26.0)	17(17.7)	26(27.1)	28(29.2)	96(100.0)
비선수	4	13(19.7)	16(24.2)	17(25.8)	20(30.3)	66(100.0)
복역수	5	12(30.0)	12(30.0)	8(20.0)	8(20.0)	40(100.0)
	6	4(20.0)	4(20.0)	6(30.0)	6(30.0)	20(100.0)
	7	10(28.6)	7(20.0)	8(22.9)	10(28.6)	35(100.0)
	합 계	170(22.7)	120(16.0)	183(24.4)	276(36.8)	749(100.0)

^{*} chi-square=30.070, df=18, p=.037

<표 4-30>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절도)

				절도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1	71(20.7)	41(12.0)	84(24.5)	147(42.9)	343(100.0)
	2	36(24.0)	28(18.7)	35(23.3)	51(34.0)	150(100.0)
	3	26(27.1)	12(12.5)	30(31.3)	28(29.2)	96(100.0)
비선스	4	18(26.1)	11(15.9)	19(27.5)	21(30.4)	69(100.0)
복역수	5	13(31.0)	11(26.2)	7(16.7)	11(26.2)	42(100.0)
	6	3(14.3)	4(19.0)	5(23.8)	9(42.9)	21(100.0)
	7	12(34.3)	7(20.0)	6(17.1)	10(28.6)	35(100.0)
	합 계	179(23.7)	114(15.1)	186(24.6)	277(36.6)	756(100.0)

^{*} chi-square=25.620, df=18, p=.109

<표 4-30>는 절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약 60%가 절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침입절도와는 달리 절도에 있어서는 복역수가 처벌의확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1>은 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응답자의 약 66%가 강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복역수가 처벌의 확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표 4-32>의 성범죄 역시 강도와 마찬가지로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1>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강도)

			강도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1	70(20.3)	29(8.4)	73(21.2)	172(50.0)	344(100.0)		
	2	32(21.5)	17(11.4)	39(26.2)	61(40.9)	149(100.0)		
	3	24(25.5)	10(10.6)	25(26.6)	35(37.2)	94(100.0)		
복역수	4	19(28.8)	9(13.6)	14(21.2)	24(36.4)	66(100.0)		
青草干	5	15(37.5)	6(15.0)	7(17.5)	12(30.0)	40(100.0)		
	6	3(15.0)	2(10.0)	3(15.0)	12(60.0)	20(100.0)		
	7	8(23.5)	7(20.6)	7(20.6)	12(35.3)	34(100.0)		
	합 계	171(22.9)	80(10.7)	168(22.5)	328(43.9)	747(100.0)		

^{*} chi-square=24.157, df=18, p=.150

<표 4-32>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성범죄)

				성범죄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1	65(18.8)	38(11.0)	78(22.5)	165(47.7)	346(100.0)
	2	31(20.9)	18(12.2)	30(20.3)	69(46.6)	148(100.0)
	3	26(26.8)	15(15.5)	20(20.6)	36(37.1)	97(100.0)
복역수	4	21(31.8)	11(16.7)	11(16.7)	23(34.8)	66(100.0)
サラナ	5	16(41.0)	6(15.4)	7(17.9)	10(25.6)	39(100.0)
	6	6(30.0)	3(15.0)	1(5.0)	10(50.0)	20(100.0)
	7	8(22.9)	8(22.9)	5(14.3)	14(40.0)	35(100.0)
	합 계	173(23.0)	99(13.2)	152(20.2)	327(43.5)	751(100.0)

^{*} chi-square=28.015, df=18, p=0.062

<표 4-33>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사기・횡령)

			사기,횡령					
	-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1	72(20.5)	43(12.3)	82(23.4)	154(43.9)	351(100.0)		
	2	33(20.8)	17(10.7)	45(28.3)	64(40.3)	159(100.0)		
	3	29(29.9)	14(14.4)	27(27.8)	27(27.8)	97(100.0)		
비선스	4	16(23.5)	15(22.1)	13(19.1)	24(35.3)	68(100.0)		
복역수	5	12(30.0)	11(27.5)	8(20.0)	9(22.5)	40(100.0)		
	6	5(26.3)	3(15.8)	3(15.8)	8(42.1)	19(100.0)		
	7	6(17.6)	10(29.4)	11(32.4)	7(20.6)	34(100.0)		
	합 계	173(22.5)	113(14.7)	189(24.6)	293(38.2)	768(100.0)		

^{*} chi-square=35.405, df=18, p=.008

<표 4-34>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약물범죄)

빈도(%)

			약물범죄					
	-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1	79(23.1)	32(9.4)	78(22.8)	153(44.7)	342(100.0)		
	2	41(27.5)	19(12.8)	31(20.8)	58(38.9)	149(100.0)		
	3	42(42.9)	9(9.2)	16(16.3)	31(31.6)	98(100.0)		
비선스	4	24(36.4)	8(12.1)	9(13.6)	25(37.9)	66(100.0)		
복역수	5	19(48.7)	3(7.7)	7(17.9)	10(25.6)	39(100.0)		
	6	6(28.6)	5(23.8)	1(4.8)	9(42.9)	21(100.0)		
	7	11(31.4)	6(17.1)	8(22.9)	10(28.6)	35(100.0)		
	합 계	222(29.6)	82(10.9)	150(20.0)	296(39.5)	750(100.0)		

^{*} chi-square=36.227, df=18, p=.007

한편, <표 4-33>과 <표 4-34> 사기·횡령과 약물범죄에 있어서는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복역수가 많을수록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기·횡령에 대해서는 63%의 응답자들이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물범죄에 대해서는 약 59%의 응답자들이 처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4-35>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폭행・상해)

빈도(%)

				폭행,상해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0	12(20.3)	6(10.2)	13(22.0)	28(47.5)	59(100.0)
	1	25(12.8)	25(12.8)	56(28.6)	90(45.9)	196(100.0)
	2	18(16.8)	14(13.1)	35(32.7)	40(37.4)	107(100.0)
	3	19(18.8)	15(14.9)	34(33.7)	33(32.7)	101(100.0)
전과수	4	8(17.8)	10(22.2)	10(22.2)	17(37.8)	45(100.0)
	5	8(17.8)	4(8.9)	13(28.9)	20(44.4)	45(100.0)
	6	4(15.4)	4(15.4)	8(30.8)	10(38.5)	26(100.0)
	7	7(17.1)	3(7.3)	15(36.6)	16(39.0)	41(100.0)
	합 계	101(16.3)	81(13.1)	184(29.7)	254(41.0)	620(100.0)

^{*} chi-square=15.703, df=21, p=.786

<표 4-35>부터는 전과수에 따라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교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폭행·상해를 살펴보자. 전체 응답자의 약 71%가 폭행·상해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처벌의 확실성은 전과수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6>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침입절도)

				침입절도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0	13(22.8)	6(10.5)	16(28.1)	22(38.6)	57(100.0)
	1	34(17.5)	39(20.1)	48(24.7)	73(37.6)	194(100.0)
	2	25(23.8)	18(17.1)	24(22.9)	38(36.2)	105(100.0)
	3	31(31.6)	14(14.3)	23(23.5)	30(30.6)	98(100.0)
전과수	4	14(31.8)	12(27.3)	12(27.3)	6(13.6)	44(100.0)
	5	8(20.5)	5(12.8)	12(30.8)	14(35.9)	39(100.0)
	6	5(20.8)	8(33.3)	4(16.7)	7(29.2)	24(100.0)
	7	12(29.3)	7(17.1)	12(29.3)	10(24.4)	41(100.0)
	합 계	142(23.6)	109(18.1)	151(25.1)	200(33.2)	602(100.0)

^{*} chi-square=27.034, df=21, p=.170

<표 4-37>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절도) 빈도(%)

				절도		
	-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0	13(22.4)	4(6.9)	17(29.3)	24(41.4)	58(100.0)
	1	38(19.5)	42(21.5)	46(23.6)	69(35.4)	195(100.0)
	2	27(26.2)	16(15.5)	23(22.3)	37(35.9)	103(100.0)
	3	33(33.3)	12(12.1)	29(29.3)	25(25.3)	99(100.0)
전과수	4	16(35.6)	11(24.4)	11(24.4)	7(15.6)	45(100.0)
	5	8(19.5)	5(12.2)	12(29.3)	16(39.0)	41(100.0)
	6	8(32.0)	5(20.0)	4(16.0)	8(32.0)	25(100.0)
	7	11(27.5)	10(25.0)	6(15.0)	13(32.5)	40(100.0)
	합 계	154(25.4)	105(17.3)	148(24.4)	199(32.8)	606(100.0)

^{*} chi-square=31.655, df=21, p=.063

<표 4-36>과 <표4-37>는 침입절도나 절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전과수와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8>과 <표 4-39>를 보면, 강도와 성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전과수는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기·횡령과 약물범죄에 대한 교차분석은 전과수가 처벌의 확실 성과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40>과 <표 4-41>).

<표 4-38>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강도)

				강도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0	13(22.4)	5(8.6)	12(20.7)	28(48.3)	58(100.0)
	1	35(17.9)	23(11.8)	54(27.7)	83(42.6)	195(100.0)
	2	25(24.0)	10(9.6)	29(27.9)	40(38.5)	104(100.0)
	3	34(34.7)	8(8.2)	22(22.4)	34(34.7)	98(100.0)
전과수	4	12(27.9)	10(23.3)	6(14.0)	15(34.9)	43(100.0)
	5	8(21.1)	3(7.9)	9(23.7)	18(47.4)	38(100.0)
	6	4(16.7)	4(16.7)	4(16.7)	12(50.0)	24(100.0)
	7	13(33.3)	6(15.4)	8(20.5)	12(30.8)	39(100.0)
	합 계	144(24.0)	69(11.5)	144(24.0)	242(40.4)	599(100.0)

^{*} chi-square=27.296, df=21, p=.161

<표 4-39>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성범죄)

				성범죄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0	12(20.7)	4(6.9)	13(22.4)	29(50.0)	58(100.0)
	1	33(17.0)	28(14.4)	46(23.7)	87(44.8)	194(100.0)
	2	24(22.9)	13(12.4)	23(21.9)	45(42.9)	105(100.0)
	3	34(34.3)	12(12.1)	16(16.2)	37(37.4)	99(100.0)
전과수	4	16(37.2)	10(23.3)	8(18.6)	9(20.9)	43(100.0)
	5	10(25.6)	6(15.4)	6(15.4)	17(43.6)	39(100.0)
	6	8(33.3)	5(20.8)	2(8.3)	9(37.5)	24(100.0)
	7	12(30.0)	8(20.0)	8(20.0)	12(30.0)	40(100.0)
	합 계	149(24.8)	86(14.3)	122(20.3)	245(40.7)	602(100.0)

^{*} chi-square=31.956, df=21, p=.059

<표 4-40>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사기・횡령)

				사기,횡령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 계
	0	10(17.2)	11(19.0)	12(20.7)	25(43.1)	58(100.0)
	1	35(17.7)	31(15.7)	52(26.3)	80(40.4)	198(100.0)
	2	26(23.4)	15(13.5)	32(28.8)	38(34.2)	111(100.0)
	3	34(34.0)	10(10.0)	21(21.0)	35(35.0)	100(100.0)
전과수	4	15(34.1)	14(31.8)	6(13.6)	9(20.5)	44(100.0)
	5	7(17.1)	9(22.0)	10(24.4)	15(36.6)	41(100.0)
	6	6(25.0)	4(16.7)	8(33.3)	6(25.0)	24(100.0)
	7	9(23.1)	8(20.5)	13(33.3)	9(23.1)	39(100.0)
	합 계	142(23.1)	102(16.6)	154(25.0)	217(35.3)	615(100.0)

^{*} chi-square=35.806, df=21, p=.023

<표 4-41> 전과수와 처벌의 확실성(약물범죄)

_		
HÌ	Γ	(0/)

				약물범죄		
		매우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높다	합계
	0	15(25.9)	5(8.6)	14(24.1)	24(41.4)	58(100.0)
	1	46(23.7)	26(13.4)	45(23.2)	77(39.7)	194(100.0)
	2	33(31.4)	11(10.5)	23(21.9)	38(36.2)	105(100.0)
	3	44(44.4)	6(6.1)	11(11.1)	38(38.4)	99(100.0)
전과수	4	21(48.8)	5(11.6)	8(18.6)	9(20.9)	43(100.0)
	5	12(30.)	6(15.0)	5(12.5)	17(42.5)	40(100.0)
	6	8(34.8)	5(21.7)	2(8.7)	8(34.8)	23(100.0)
	7	14(34.1)	5(12.2)	12(29.3)	10(24.4)	41(100.0)
	합 계	193(32.0)	69(11.4)	120(19.9)	221(36.7)	603(100.0)

^{*} chi-square=35.802, df=21, p=.023

요약해 보면, alpha=.05 수준에서 침입절도, 사기·횡령, 약물범죄 세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은 복역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복역수가 많을수록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폭행상해, 절도, 강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전과수와 처벌가능성의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역시 사기횡령, 약물범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타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은 전과수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사기ㆍ횡령과 약물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은 전과수가 많을수록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침입절도에 대한 것만제외하고 사기ㆍ횡령이나 약물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수와 복역수가 각각처벌의 확실성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결과는 사기 · 횡령이나 약물범죄와 같이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복역한 경험이나 전과수가 많을수록 처벌의 확실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출적 범죄에 대해서는 억제이론 내지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볼 수 있겠지만 처벌이 범죄억제와 어떤 상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수형생활에 대한 태도와 향후 범죄가능성

다음의 분석결과들은 수형생활에 대한 적응정도가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수형자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시설 내 수용과정을 통하여 결국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와 이들의 향후 범죄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처벌의 범죄억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표 4-42> 규칙의 합리성과 범죄가능성

빈도(%)

			범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56	24	29	17	16	142			
	아니다	(39.4)	(16.9)	(20.4)	(12.0)	(11.3)	(100.0)			
	대체로	81	4	46	37	14	226			
	아니다	(35.8)	(21.2)	(20.4)	(16.4)	(6.2)	(100.0)			
규칙의	대체로	195	98	87	40	15	435			
합리성	그렇다	(44.8)	(22.5)	(20.0)	(9.2)	(3.4)	(100.0)			
	매우	56	19	27	18	8	128			
	그렇다	(43.8)	(14.8)	(21.1)	(14.1)	(6.3)	(100.0)			
	합 계	388 (41.7)	189 (20.3)	189 (20.3)	112 (12.0)	53 (5.7)	931 (100.0)			

^{*} chi-square=25.752, df=12, p=0.012

<표 4-42>는 교도소 내 생활수칙이나 규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출소 후의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소내 생활수칙이나 규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출소후 범죄가능성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도소 내 규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향후 범죄가능성의 부적인(negative) 관계는 수형자들이 소내 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표 4-43>은 소내 생활수칙이나 규율이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정도와 출소 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규율적용의 공정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4-43> 규율적용의 공정성과 범죄가능성

			범죄가능성						
	•	1	2	3	4	5	합 계		
규율	전혀 아니다	76 (39.2%)	36 (18.6%)	42 (21.6%)	25 (12.9%)	15 (7.7%)	194 (100.0%)		
	대체로 아니다	112 (38.8%)	61 (21.1%)	63 (21.8%)	35 (12.1%)	18 (6.2%)	289 (100.0%)		
적용의 공정성	대체로 그렇다	158 (44.6%)	80 (22.6%)	67 (18.9%)	34 (9.6%)	15 4.2%()	354 (100.0%)		
	매우 그렇다	41 (44.1%)	12 (12.9%)	17 (18.3%)	18 (19.4%)	5 (5.4%)	93 (100.0%)		
	합 계	387 (41.6%)	189 (20.3%)	189 (20.3%)	112 (12.0%)	53 (5.7%)	930 (100.0%)		

^{*} chi-square=15.458, df=12, p=0.217

			범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수형	전혀 아니다	14 (33.3)	7 (16.7)	10 (23.8)	4 (9.5)	7 (16.7)	42 (100.0)		
	대체로 아니다	22 (26.2)	17 (20.2)	23 (27.4)	14 (16.7)	8 (9.5)	84 (100.0)		
생활 적응	대체로 그렇다	242 (41.9)	131 (22.7)	119 (20.6)	62 (10.7)	24 (4.2)	578 (100.0)		
정도	매우 그렇다	109 (48.4)	34 (15.1)	37 (16.4)	31 (13.8)	14 (6.2)	225 (100.0)		
	합 계	387 (41.7)	189 (20.3)	189 (20.3)	111 (11.9)	53 (5.7)	929 (100.0)		

^{*} chi-square=33.511, df=12, p=0.001

<표 4-44>는 수형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 차분석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수형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수형자일 수록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4-45>는 수형생활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수형생활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정도가 심한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의 가능성은 더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수형생활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교도소내 생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결과는 적응정도와 범죄가능성의 관계가 역시예상대로 부적인(negative)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45> 수형생활의 고통정도와 범죄가능성

			범죄가능성							
				범쇠/	イラ る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81	16	25	9	9	140			
	아니다	(57.9)	(11.4)	(17.9)	(6.4)	(6.4)	(100.0)			
수형	대체로	148	86	63	36	15	348			
	아니다	(42.5)	(24.7)	(18.1)	(10.3)	(4.3)	(100.0)			
생활의	대체로	98	56	71	42	15	282			
고통	그렇다	(34.8)	(19.9)	(25.2)	(14.9)	(5.3)	(100.0)			
정도	매우	60	27	30	26	13	156			
	그렇다	(38.5)	(17.3)	(19.2)	(16.7)	(8.3)	(100.0)			
	중)a))	387	185	189	113	52	926			
	합 계	(41.8)	(20.0)	(20.4)	(12.2)	(5.6)	(100.0)			

^{*} chi-square=38.982, df=12, p=0.000

<표 4-46> 개과천선의 정과 범죄가능성

빈도(%)

-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아니다	34 (32.7)	13 (12.5)	22 (21.2)	20 (19.2)	15 (14.4)	104 (100.0)
	대체로 아니다	38 (27.3)	28 (20.1)	38 (27.3)	21 (15.1)	14 (10.1)	139 (100.0)
개과 천선의 정	대체로 그렇다	119 (33.0)	90 (24.9)	88 (24.4)	48 (13.3)	16 (4.4)	361 (100.0)
78	매우 그렇다	196 (60.5)	57 (17.6)	40 (12.3)	23 (7.1)	8 (2.5)	324 (100.0)
	합 계	387 (41.7)	188 (20.3)	188 (20.3)	112 (12.1)	53 (5.7)	928 (100.0)

^{*} chi-square=105.592, df=12, p=0.000

<표 4-46>은 수형생활을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정도와 출소 후 범죄가능성의 교차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는 개과천선의 정이 강할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형생활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경우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하 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47> 교도관의 태도의 공정성과 범죄가능성

			범죄가능성							
	•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아니다	79 (42.0)	28 (14.9)	39 (20.7)	23 (12.2)	19 (10.1)	188 (100.0)			
	대체로 아니다	82 (34.5)	60 (25.2)	49 (20.6)	34 (14.3)	13 (5.5)	238 (100.0)			
교도관 태도의 공정성	대체로 그렇다	173 (42.4)	91 (22.3)	85 (20.8)	43 (10.5)	16 (3.9)	408 (100.0)			
중성성	매우 그렇다	53 (54.6)	10 (10.3)	16 (16.5)	13 (13.4)	5 (5.2)	97 (100.0)			
	합 계	387 (41.6)	189 (20.3)	189 (20.3)	113 (12.1)	53 (5.7)	931 (100.0)			

^{*} chi-square=29.495, df=12, p=0.003

< 표 4-47>은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느끼는가 하는 점과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보 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4-48> 교도관들의 고충처리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빈도(%)

			범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56	25	33	21	16	151	
	아니다	(37.1%)	(16.6%)	(21.9%)	(13.9%)	(10.6%)	(100.0%)	
	대체로	129	59	51	42	12	293	
	아니다	(44.0%)	(20.1%)	(17.4%)	(14.3%)	(4.1%)	(100.0%)	
교도관들의	대체로	165	95	83	41	18	402	
고충처리의	그렇다	(41.0%)	(23.6%)	(20.6%)	(10.2%)	(4.5%)	(100.0%)	
고등시디의	매우	39	10	22	9 (10.3%)	7	87	
적절성	그렇다	(44.8%)	(11.5%)	(25.3%)		(8.0%)	(100.0%)	
	합 계	389 (41.7%)	189 (20.3%)	189 (20.3%)	113 (12.1%)	53 (5.7%)	933 (100.0%)	

^{*} chi-square=23.096, df=12, p=0.027

<표 4-48>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적절하게 고충처리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두 분석에서 교도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수형자들의 경우 그만큼 교도소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있으며 이 경우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고 평가한 것으로서, 교도소 내 교도관들의 태도나 행동이 수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49> 의료서비스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빈도(%)

			범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아니다	99 (45.2)	37 (16.9)	36 (16.4)	28 (12.8)	19 (8.7)	219 (100.0)	
	대체로 아니다	127 (35.2)	85 (23.5)	84 (23.3)	50 (13.9)	15 (4.2)	361 (100.0)	
의료 서비스의 적절성	대체로 그렇다	127 (45.0)	60 (21.3)	53 (18.8)	27 (9.6)	15 (5.3)	282 (100.0)	
	매우 그렇다	36 (50.7)	7 (9.9)	16 (22.5)	8 (11.3)	4 (5.6)	71 (100.0)	
	합 계	389 (41.7)	189 (20.3)	189 (20.3)	113 (12.1)	53 (5.7)	933 (100.0)	

^{*} chi-square=24.742, df=12, p=0.016

< 표 4-49>는 소내 의료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가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출소 후 범죄의 가능성은 더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소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상당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 내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출소 후 범죄가능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표 4-50> 거실 수형자 수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빈도(%)

		범죄가능성					
	•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거실 수형자 수의 적절성	전혀 아니다	197 (42.9)	83 (18.1)	83 (18.1)	66 (14.4)	30 (6.5)	459 (100.0)
	대체로 아니다	115 (43.1)	67 (25.1)	53 (19.9)	23 (8.6)	9 (3.4)	267 (100.0)
	대체로 그렇다	64 (37.2)	35 (20.3)	42 (24.4)	22 (12.8)	9 (5.2)	172 (100.0)
	매우 그렇다	13 (39.4)	4 (12.1)	9 (27.3)	2 (6.1)	5 (15.2)	33 (100.0)
	합 계	389 (41.8)	189 (20.3)	187 (20.1)	113 (12.1)	53 (5.7)	931 (100.0)

^{*} chi-square=23.803, df=12, p=0.022

<표 4-50>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수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 면 alpha=.05 수준에서,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수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감소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 형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실수용인원에 대한 불만과 향후 범죄가능성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이 교차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1> 작업훈련시설의 적절성과 향후 범죄가능성 빈도(%)

		범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111	63	64	49	24	311
	아니다	(35.7)	(20.3)	(20.6)	(15.8)	(7.7)	(100.0)
작업훈련	대체로	147	65	63	28	14	317
	아니다	(46.4)	(20.5)	(19.9)	(8.8)	(4.4)	(100.0)
시설의	대체로	104	53	51	26	9	243
적절성	그렇다	(42.8)	(21.8)	(21.0)	(10.7)	(3.7)	(100.0)
	매우	21	4	9	7	6	47
	그렇다	(44.7)	(8.5)	(19.1)	(14.9)	(12.8)	(100.0)
	합 계	383 (41.7)	185 (20.2)	187 (20.4)	110 (12.0)	53 (5.8)	918 (100.0)

^{*} chi-square=23.974, df=12, p=0.021

<표 4-51>은 교도소 내 작업장이나 직업훈련 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 져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보여 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작업장이나 직업훈련시설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 는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4-52>는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역시 앞에 서 본 시설의 적절성과 마찬가지로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해서 만족 하는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 훈련이나 교도 작업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결국 소내 생활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보여주며 이와 같이 소내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수형자일 수록 출소후 범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 교차분석의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다.

<표 4-52> 교도작업/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범죄가능성

							근그(/0)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계
	전혀	115	56	60	48	24	303
	아니다	(38.0)	(18.5)	(19.8)	(15.8)	(7.9)	(100.0)
교도	대체로	131	73	62	30	16	312
작업/	아니다	(42.0)	(23.4)	(19.9)	(9.6)	(5.1)	(100.0)
직업	대체로	109	57	49	27	8	250
훈련에	그렇다	(43.6)	(22.8)	(19.6)	(10.8)	(3.2)	(100.0)
대한	매우	33	3	14	8	5	63
만족도	그렇다	(52.4)	(4.8)	(22.2)	(12.7)	(7.9)	(100.0)
	합 계	388 (41.8)	189 (20.4)	185 (19.9)	113 (12.2)	53 (5.7)	928 (100.0)

^{*} chi-square=24.842, df=12, p=0.016

<표 4-53> 엄중한 처벌의 효과와 향후 범죄가능성

빈도(%)

			범죄가능성/C11R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전혀 아니다	126 (40.3)	59 (18.8)	58 (18.5)	42 (13.4)	28 (8.9)	313 (100.0)
엄중한 처벌의 효과	대체로 아니다	101 (39.3)	62 (24.1)	51 (19.8)	33 (12.8)	10 (3.9)	257 (100.0)
	대체로 그렇다	98 (43.0)	49 (21.5)	47 (20.6)	26 (11.4)	8 (3.5)	228 (100.0)
	매우 그렇다	63 (47.7)	17 (12.9)	33 (25.0)	12 (9.1)	7 (5.3)	132 (100.0)
	합 계	388 (41.7)	187 (20.1)	189 (20.3)	113 (12.2)	53 (5.7)	930 (100.0)

^{*} chi-square=20.516, df=12, p=0.058

<표 4-53>은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

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동의하는 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해 보면, 교도소 내 생활에 대한 적응정도와 향후 범죄가능성의 관계를 검토하는 교차분석 결과들은 대체로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교도관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시설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는 수형자일수록 출소한 다음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들이 소내 생활에 적절히 적응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처벌의 범죄억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라.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출소 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첫 번째 모델에서는 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포함시켜 모델을 구성하였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첫 번째 모델에 포함된 여러 변인들과 아울러처벌의 확실성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범죄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확실성은 앞에서 이용한 각 범죄의 체포가능성에 대한 표준점수의 합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 처벌의 엄격성 역시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 인지도에 대한 표준점수의 합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 표 4-54>는 처벌의 확실성 인지도에 대한 회귀방정식의 계수들이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처벌의 확실성을 포함하는 회귀방정식의 계수들이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 4-54> 억제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확실성

확실성		범죄가능성	
b	β	b	β
-1	280	2.11	3***
.972 191 102 085 099 099 047 475	.145***01402003705039019130**	025 .081 071 027 .023 .050 .071 .175 004	180 .030 067 057 .063 .097* .137*** .232***
.042		.153	
	.972 191 102 085 099 099 047	b β -1.280 .972 .145***19102010203708505099039047019475130**	b β b -1.280 2.11 .972 .145***025 191014 .081 102020071 102037 027 08505 .023 099039 .050 047019 .071 475004

^{*} p<.05 **p<.01 ***p<.001

<표 4-54>를 보면, 처벌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에서 나이와 복역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수형 자일수록 처벌의 확실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복역수가 많을수록 오 히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덜 확실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역수와 처벌의 확실성의 관계는 앞의 교차분석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출소 후 범죄가능성은 사회적 긴장, 상대적 박탈감, 복역수와 같은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큰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이 증가하고 복역수가 많을수록 범죄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에서 복역수에출소 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단지처벌의 확실성이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수형자로하여금 장래 출소 후 범죄억제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5> 억제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엄격성

	엄격성		범죄가능성	
	b	β	b	β
Constant	-2.4	-2.479* 2.102*		2***
나이	.738	.117**	022	016
결혼	.332	.027	.063	.023
교육	.063	.013	071	067
자아존중심	042	020	024	050
자기통제력	049	028	.017	.046
사회적 긴장	192	081	.061	.119**
상대적 박탈감	.163	.069	.074	.142***
복역수	.030	.009	.180	.238***
엄격성			003	017
R^2	.0.)25	.16	60

^{*} p<.05 **p<.01 ***p<.001

<표 4-55>는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엄격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역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긴장,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복역수가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낙인효과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범죄를 한 이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질문을 하였으며 그 대답의 빈도와 비율은 <표 4-5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처음 범죄를 행한 이후에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나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약 20%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31.8%의 응답자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여 51.7%의 응답자가 자신이 범죄자라는 생각이 든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응답자도 22%에 이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절반가량은 처음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자신이 정말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 6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주위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37%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형자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에 대해서 60%가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 없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표 4-56> 범죄 이후의 인식변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186 (19.9)	298 (31.8)	247 (26.4)	206 (22.0)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78 (8.3)	255 (27.2)	326 (34.8)	279 (29.7)
주변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74 (7.9)	235 (25.1)	335 (35.8)	292 (31.2)
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 는 것같았다	94 (10.0)	281 (30.0)	284 (30.3)	277 (29.6)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었다	194 (20.8)	272 (29.2)	185 (19.8)	281 (30.2)

1. 범죄에 따른 낙인의 정도

그러면 전과수와 낙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표 4-57>에서 <표 4-61>은 전과수와 낙인에 대한 교차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낙인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느 항목과도 전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전과의 횟수가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낙인의시작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이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57>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빈도(%)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 계
	0	13(22.4)	10(17.2)	19(32.8)	16(27.6)	58(100.0)
	1	50(24.4)	53(25.9)	63(30.7)	39(19.0)	205(100.0)
전과수	2	24(20.9)	36(31.3)	37(32.2)	18(15.7)	115(100.0)
	3	19(17.6)	33(30.6)	30(27.8)	26(24.1)	108(100.0)
	4	9(18.4)	8(16.3)	22(44.9)	10(20.4)	49(100.0)
	5	10(20.0)	19(38.0)	14(28.0)	7(14.0)	50(100.0)
	6	3(11.5)	7(26.9)	9(34.6)	7(26.9)	26(100.0)
	7	12(26.1)	12(26.1)	19(41.3)	3(6.5)	46(100.0)
	합 계	140(21.3)	178(27.1)	213(32.4)	126(19.2)	657(100.0)

^{*} chi-square=25.632, df=21, p=.221

<표 4-58>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빈도(%)

				_ /\ _//	•	C (7 %)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0	21(36.2)	15(25.9)	19(32.8)	3(5.2)	58(100.0)
	1	57(27.8)	84(41.0)	45(22.0)	19(9.3)	205(100.0)
	2	35(30.2)	41(35.3)	32(27.6)	8(6.9)	116(100.0)
	3	26(24.1)	31(28.7)	40(37.0)	11(10.2)	108(100.0)
전과수	4	16(32.7)	17(34.7)	13(26.5)	3(6.1)	49(100.0)
	5	11(22.0)	23(46.0)	13(26.0)	3(6.0)	50(100.0)
	6	4(15.4)	10(38.5)	9(34.6)	3(11.5)	26(100.0)
	7	14(30.4)	11(23.9)	17(37.0)	4(8.7)	46(100.0)
	합 계	184(28.0)	232(35.3)	188(28.6)	54(8.2)	658(100.0)

^{*} chi-square=23.367, df=21, p=.325

<표 4-59> 주변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빈도(%)

		주변사림	<u> </u> 일상적인	일을 함께 ह	하는 것이 어려	워졌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 계
	0	20(34.5)	13(22.4)	21(36.2)	4(6.9)	58(100.0)
	1	60(29.3)	90(43.9)	44(21.5)	11(5.4)	205(100.0)
	2	42(36.5)	34(29.6)	30(26.1)	9(7.8)	115(100.0)
	3	27(25.0)	40(37.0)	31(28.7)	10(9)	108(100.0)
전과수	4	14(28.6)	16(32.7)	14(28.6)	5(10)	49(100.0)
	5	16(32.0)	19(38.0)	12(24.0)	3(6.0)	50(100.0)
	6	7(26.9)	10(38.5)	5(19.2)	4(15.4)	26(100.0)
	7	12(26.1)	14(30.4)	13(28.3)	7(15.2)	46(100.0)
	합 계	198(30.1)	236(35.9)	170(25.9)	53(8.1)	657(100.0)

^{*}chi-square=24.259, df=21, p=.28

<표 4-60> 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빈도(%)

						L-(/ 0/
		주변시	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	았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0	19(33.3)	15(26.3)	18(31.6)	5(8.8)	57(100.0)
	1	58(28.3)	67(32.7)	63(30.7)	17(8.3)	205(100.0)
전과수	2	38(32.8)	36(31.0)	29(25.0)	13(11.2)	116(100.0)
611	3	25(23.1)	34(31.5)	39(36.1)	10(9.3)	108(100.0)
	4	14(28.6)	16(32.7)	15(30.6)	4(8.2)	49(100.0)
	5	15(30.6)	15(30.6)	16(32.7)	3(6.1)	49(100.0)
	6	3(11.5)	12(46.2)	5(19.2)	6(23.1)	26(100.0)
	7	11(23.9)	10(21.7)	17(37.0)	8(17.4)	46(100.0)
	합 계	183(27.9)	205(31.3)	202(30.8)	66(10.1)	656(100.0)

^{*} chi-square=21.901, df=21, p=.405

<표 4-61>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빈도(%)

		나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 계			
	0	21(36.8)	10(17.5)	12(21.1)	14(24.6)	57(100.0)			
	1	62(30.4)	40(19.6)	63(30.9)	39(19.1)	204(100.0)			
	2	37(32.2)	22(19.1)	34(29.6)	22(19.1)	115(100.0)			
	3	23(21.3)	26(24.1)	34(31.5)	25(23.1)	108(100.0)			
전과수	4	15(30.6)	9(18.4)	13(26.5)	12(24.5)	49(100.0)			
	5	15(30.0)	9(18.0)	18(36.0)	8(16.0)	50(100.0)			
	6	6(23.1)	8(30.8)	4(15.4)	8(30.8)	26(100.0)			
	7	10(22.2)	12(26.7)	11(24.4)	12(26.7)	45(100.0)			
	합 계	189(28.9)	136(20.8)	189(28.9)	140(21.4)	654(100.0)			

^{*} chi-square=16.936, df=21, p=.715

그렇다면 전과횟수보다 더 낙인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될 수 있는 복역 수와 낙인의 관계는 어떠한지 역시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62>에서 <표 4-66>은 낙인을 측정하는 각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 가지의 항목 중에서 주변사람들의 외면, 잘 모르는 곳으로 이주 희망의 두 항목이 α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복역횟수가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 자신을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약해 보면, 전과수나 복역수가 낙인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단은 낙인이론의 논지를 따른다면 전과나 복역의 횟수가 많은 수형자일수록 낙인으로 인하여 자신이 범죄자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본다. 다르게 본다면, 처음 범죄 이후 범죄자의 오명을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한 전과수나 복역수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어쨌든 두 변인 사이의 교차분석 결과는 낙인의 과정에 대한 결정적 대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과수보다는 복역수가 낙인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표 4-62>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빈도(%)

		나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 계	
	1	92(24.9)	78(21.1)	118(32.0)	81(22.0)	369(100.0)	
	2	37(22.6)	51(31.1)	47(28.7)	29(17.7)	164(100.0)	
	3	22(20.4)	32(29.6)	31(28.7)	23(21.3)	108(100.0)	
복역수	4	15(20.3)	22(29.7)	25(33.8)	12(16.2)	74(100.0)	
441	5	10(21.3)	13(27.7)	17(36.2)	7(14.9)	47(100.0)	
	6	4(17.4)	5(21.7)	7(30.4)	7(30.4)	23(100.0)	
	7	4(10.5)	11(28.9)	17(44.7)	6(15.8)	38(100.0)	
	합 계	184(22.4)	212(25.8)	262(31.8)	165(20.0)	823(100.0)	

^{*} chi-square=17.580, df18, p=.48

<표 4-63> 변사람들 나를 피 것같았다

빈도(%)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 계		
	1	128(34.7)	116(31.4)	96(26.0)	29(7.9)	369(100.0)		
	2	46(27.9)	66(40.0)	43(26.1)	10(6.1)	165(100.0)		
	3	34(31.5)	31(28.7)	25(23.1)	18(16.7)	108(100.0)		
	4	15(20.3)	31(41.9)	21(28.4)	7(9.5)	74(100.0)		
복역수	5	12(25.5)	18(38.3)	15(31.9)	2(4.3)	47(100.0)		
	6	5(21.7)	7(30.4)	8(34.8)	3(13.0)	23(100.0)		
	7	9(23.7)	9(23.7)	18(47.4)	2(5.3)	38(100.0)		
	합 계	249(30.2)	278(33.7)	226(27.4)	71(8.6)	824(100.0)		

^{*} chi-square=32.085, df=18, p=.021

<표 4-64> 주변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빈도(%)

		주변사림	들과 일상적인	! 일을 함께 ;	하는 것이 어려	워졌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 계
	1	126(34.2)	121(32.9)	98(26.6)	23(6.3)	368(100.0)
	2	60(36.6)	58(35.4)	37(22.6)	9(5.5)	164(100.0)
	3	28(25.9)	33(30.6)	33(30.6)	14(13.0)	108(100.0)
	4	18(24.3)	30(40.5)	18(24.3)	8(10.8)	74(100.0)
복역수	5	14(29.8)	19(40.4)	12(25.5)	2(4.3)	47(100.0)
	6	4(17.4)	8(34.8)	6(26.1)	5(21.7)	23(100.0)
	7	11(28.9)	8(21.1)	14(36.8)	5(13.2)	38(100.0)
	합 계	261(31.8)	277(33.7)	218(26.5)	66(8.0)	822(100.0)

^{*} chi-square=27.539, df=18, p=.069

<표 4-65> 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빈도(%)

		주변시	라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 대하는 것 같	 았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 계
	1	124(33.6)	95(25.7)	116(31.4)	34(9.2)	369(100.0)
	2	50(30.3)	55(33.3)	47(28.5)	13(7.9)	165(100.0)
	3	28(25.9)	38(35.2)	27(25.0)	15(13.9)	108(100.0)
비선수	4	15(20.3)	25(33.8)	26(35.1)	8(10.8)	74(100.0)
복역수	5	16(34.8)	12(26.1)	15(32.6)	3(6.5)	46(100.0)
	6	4(17.4)	7(30.4)	9(39.1)	3(13.0)	23(100.0)
	7	9(23.7)	11(28.9)	11(28.9)	7(18.4)	38(100.0)
	합 계	246(29.9)	243(29.5)	251(30.5)	83(10.1)	823(100.0)

^{*} chi-square=19.685, df=18, p=.351

<표 4-66>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빈도(%)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전혀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1	8(34.7)	63(17.1)	112(30.4)	66(17.9)	369(100.0)		
	2	5(33.5)	27(16.5)	46(28.0)	36(22.0)	164(100.0)		
	3	23(21.3)	25(23.1)	28(25.9)	32(29.6)	108(100.0)		
비선수	4	14(18.9)	21(28.4)	25(33.8)	14(18.9)	74(100.0)		
복역수	5	14(29.8)	8(17.0)	16(34.0)	9(19.1)	47(100.0)		
	6	5(21.7)	8(34.8)	3(13.0)	7(30.4)	23(100.0)		
	7	8(21.1)	11(28.9)	9(23.7)	10(26.3)	38(100.0)		
	합 계	247(30.0)	163(19.8)	239(29.0)	174(21.1)	823(100.0)		

^{*} chi-square=32.019, df=18, p=.022

그러면 범죄로 인한 낙인이 출소 후 죄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낙인과 범죄가능성

낙인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계 저지르게 한다고 본다. 이 조사에서는 낙인을 측정하고 있는 각 지표에 대해서 개인이 향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67> 낙인과 범죄가능성 -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빈도(%)

			향후 범죄가능성					
	•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매우 그렇다	115(56.1)	23(11.2)	29(14.1)	20(9.8)	18(8.8)	205(100.0)	
	대체로 그렇다	83(33.7)	68(27.6)	58(23.6)	26(10.6)	11(4.5)	246(100.0)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로 아니다	98(33.1)	67(22.6)	74(25.0)	45(15.2)	12(4.1)	296(100.0)	
EW I	전혀 아니다	90(48.9)	31(16.8)	28(15.2)	22(12.0)	13(7.1)	184(100.0)	
	합 계	386(41.5)	189(20.3)	189(20.3)	113(12.1)	54(5.8)	931(100.0)	

^{*} chi-square=58.702, df=12, p=.000

< 표 4-67>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항목과 향후 범죄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는 범죄자라는 자기의식을 가졌던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낙인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자로서의 낙인은

향후 범죄행위를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을 이 분석은 보여주고 있다.

<표 4-68>은 주변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느끼는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69>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항목과 향후 범죄가능성의교차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 역시 낙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수형자일수록 향후 범죄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표 4-70>에서는 주위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하는 수형자일수록 역시 향후 범죄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결과 역시 낙인은 범죄를 조장한다는 낙인이론의 논지와 부합하는 것으로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표 4-71>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수형자일수록 역시 향후 범죄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차분석결과 역시 낙인의 범죄증가 효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낙인에 따라서 개인이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교차분석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범죄로 인한 사회적 반응 내지는 그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이미지 변화는 곧 범죄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낙인이론의 논지와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8> 낙인과 범죄가능성 -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빈도(%)

				향후 범	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주변사람들	매우 그렇다	154(55.8)	46(16.7)	41(14.9)	19(6.9)	16(5.8)	276(100.0)
	대체로 그렇다	124(38.3)	85(26.2)	69(21.3)	35(10.8)	11(3.4)	324(100.0)
이 나를 피하는 것	대체로 아니다	82(32.2)	48(18.8)	63(24.7)	45(17.6)	17(6.7)	255(100.0)
퍼야는 것	전혀 아니다	27(35.1)	10(13.0)	16(20.8)	14(18.2)	10(13.0)	77(100.0)
	합 계	387(41.5)	189(20.3)	189(20.3)	113(12.1)	54(5.8)	931(100.0)

^{*} chi-square=62.792, df=12, p=.000

빈도(%)

							U-L(/0)
				향후 범	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매우 그렇다	167(57.6)	51(17.6)	42(14.5)	15(5.2)	15(5.2)	290(100.0)
일상적인	대체로 그렇다	117(34.9)	90(26.9)	72(21.5)	38(11.3)	18(5.4)	335(100.0)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대체로 아니다	77(33.2)	40(17.2)	58(25.0)	45(19.4)	12(5.2)	232(100.0)
어려워졌다	전혀 아니다	26(35.6)	7(9.6)	16(21.9)	15(20.5)	9(12.3)	73(100.0)
	합 계	387(41.6)	188(20.%)	188(20.2)	113(12.2)	54(5.8)	930(100.0)

^{*} chi-square=78.980, df=12, p=.000

<표 4-70> 낙인과 범죄가능성

- 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빈도(%)

		향후 범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매우 그렇다	154(56.0)	42(15.3)	43(15.6)	22(8.0)	14(5.1)	275(100.0)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대체로 그렇다	97(34.2)	83(29.2)	59(20.8)	35(12.3)	10(3.5)	284(100.0)	
	대체로 아니다	93(33.5)	56(20.1)	76(27.3)	36(12.9)	17(6.1)	278(100.0)	
	전혀 아니다	40(43.0)	8(8.6)	12(12.9)	20(21.5)	13(14.0)	93(100.0)	
	합 계	384(41.3)	189(20.3)	190(20.4)	113(12.2)	54(5.8)	930(100.00	

^{*} chi-square=79.404, df=12, p=.000

<표 4-71> 낙인과 범죄가능성 - 나에 대해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빗도(%)

							건그(/0)	
		범죄가능성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이다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합 계	
	매우 그렇다	162(57.9)	54(19.3)	33(11.8)	20(7.1)	11(3.9)	280(100.0)	
이사	대체로 그렇다	61(33.2)	51(27.7)	39(21.2)	25(13.6)	8(4.3)	184(100.0)	
가고 싶었다	대체로 아니다	94(34.9)	54(20.1)	69(25.7)	37(13.8)	15(5.6)	269(100.0)	
	전혀 아니다	68(35.2)	29(15.0)	45(23.3)	31(16.1)	20(10.4)	193(100.0)	
	합 계	385(41.6)	188(20.3)	186(20.1)	113(12.2)	54(5.8)	926(100.0)	

* chi-square=66.659, df=12, p=.000

3. 낙인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이제 낙인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배경 변인들이 낙인과 향후 범죄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낙인을 측정 하는 변인은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개의 낙인 지표에 대한 표준점수의 합을 사용하였다.

< 표 4-72>에서 첫 번째 회귀모델은 낙인에 대한 회귀분석으로서 분석 결과는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자아존중심과 사회적 긴장의 두 개 변인임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형자일수록 낙인의 오명을 수 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사회적 긴장이 높은 수형자일수 록 범죄자로서 낙인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범죄가능성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가능성이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 복역횟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람들일수록 범죄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역횟수가 많을수록역시 범죄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역횟수와 범죄가능성의관계는 앞의 교차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 과연 이 모델에서 낙인은 향후 범죄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가? 역시 앞의 여러 가지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마찬가지로 낙인은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수형자일수록 장래 출소 후 본인이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낙인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낙인의 범죄증폭 효과를 검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확실성과 엄격성에 대한 인지도가 범죄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표 4-72> 낙인의 효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낙인		의가능성
	b	β	b	β
Constant		362		2.144
나이	.050	.012	0.038	0.028***
결혼	0.236	0.027	.060	.022
교육	.015	.004	0.061	0.057
자아존중심	.212	0.141***	0.026	0.056
자기통제	.067	.056	.023	.061
사회적 긴장	.322	.195***	.040	.079
상대적 박탈감	.009	.005	.068	.131***
복역수	.086	.036	.162	.217***
낙인			.041	.132***
R^2		.103		.167

^{*} p<.05 **p<.01 ***p<.001

제4절 준법의식

수형자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점은 흥미로울 것이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의식이 일반인들과 과연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법이나 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나 준법에 대한 인식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 변화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다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준법의식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에 있어서 일반인과 형벌을 받고 있는 수형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로 인한 준법의식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에 대한 응답분표는 2000년도에 수행한 조사결과를 사용하고자 한다.67)

먼저, 우리 사회에서 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4-73>과 같다. 수형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있어서 법집행의 정당성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수형자, 일반인 모두 약 95%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견해에 대해서 수형자의 94.2%, 일반인의 91.1%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큰 것 같다는 견해에 수형자의 91%, 일반인의 92.5%가 그렇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사회의 법집행의 정당성면에 있어 두 집단 모두 상당히

⁶⁷⁾ 연성진 외, 2000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반인이나 수형자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3>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빈도(%)

법집행의 정당성	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 이 있다		549(58.5) 519(46.4)	342(36.4) 544(48.7)	38(4.0) 50(4.5)	10(1.1) 4(0.4)
10 1 12 00 1 10 1	수형자	577(61.8)	303(32.4)	33(3.5)	21(2.2)
	일반인	526(47.0)	493(44.1)	90(8.1)	8(0.7)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	수형자	508(54.3)	343(36.7)	67(7.2)	17(1.8)
의 위력이 큰 것 같다	일반인	533(47.7)	501(44.8)	71(6.4)	13(1.2)

다음으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다른 수단을 통하는 것보다 적절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74>와 같다.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에 대해서 수형자의 70%, 일 반인의 73.1%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수형자도 일반인 못지않게 법의 분쟁해결에의 적절성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쟁해결에의 적절성에 있어서 법과 비교할 경 우, 상식이나 관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에 수형자는 57.1%, 일 반인은 49.8%가 긍정하고 있음을 볼 때, 법이 상식이나 관행과 동일한 수 준에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해 결에 권력, 돈이 적절하다는 견해에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분쟁해결에 있어서 폭력의 적절성에 있어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또 분쟁해결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큰 차이 없이 법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분쟁해결의 권력, 돈, 폭력의 적절성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74> 법의 분쟁형	해결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빈도(%)
법의 분쟁해결에의 적절성	구분	확실히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낫다	수형자 일반인	211(22.5) 255(22.8)	446(47.5) 562(50.3)	210(22.4) 271(24.2)	71(7.6) 28(2.5)
법보다는 상식이나 관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수형자 일반인	149(16.0) 84(7.5)	383(41.1) 473(42.3)	280(30.0) 461(41.2)	121(13.0) 99(8.9)
법보다는 권력으로 해결 하는 것이 낫다	수형자 일반인	97(10.4) 71(6.4)	116(12.4) 191(17.1)	265(28.4) 414(37.0)	454(48.7) 441(39.4)
법보다는 돈으로 해결하 는 것이 낫다	수형자 일반인	107(11.5) 57(5.1)	161(17.3) 216(19.3)	242(25.9) 376(33.6)	423(45.3) 468(41.9)
법보다는 폭력으로 해결	수형자	29(3.1)	57(6.1)	196(21.1)	648(69.7)

현재 우리 사회의 분쟁해결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률, 권력, 돈, 연줄, 상식 및 기타를 제시한 다음, 선택하게 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에 의하면,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유용한 수단으로 법률 302명(32.6%), 돈 284명(30.6%), 권력 200명(21.6%), 상식 77명(8.3%), 연줄 33명(3.6%), 기타 31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21(1.9)

92(8.2)

350(31.3)

654(58.5)

일반인

하는 것이 낫다

일반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권력이 39.6%, 돈이 30.4%, 법률이 19.9%, 연줄 6.3%, 상식 2.9%의 순으로 분쟁해결에 유용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에서처럼 일반인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의 유용성이 권력이나 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와는 달리 수형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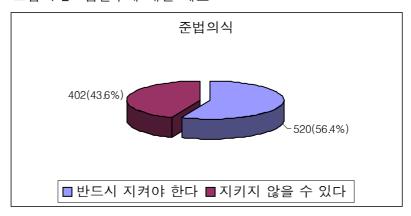
경우에는 권력이나 돈보다는 법률이 분쟁해결에 보다 유용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가장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인식

<그림 4-2>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수형자 중 56.4%인 520명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하였고, 43.6%인 402명은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74.7%인 835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였고, 25.3%인 282명은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준법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형자의 경우에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율과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일반인들과비교해서 준법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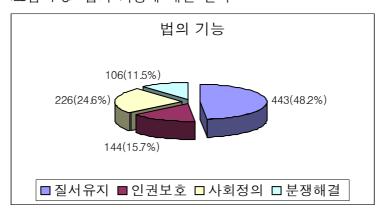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우리 사회에서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여, 질서유지, 인권보호, 사회정의, 분쟁해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 도록 한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에 따르면 수형자는 법의 기능을 질서유지라 한 경우가 443 명(38.2%)으로 가장 많고, 사회정의 226명(24.6%), 인권보호 144명(15.7%), 분쟁해결 106명(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



일반인과 관련해서는 법의 기능을 질서유지로 본 경우가 응답자의 38.6%로 수형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를 보면 인권보호가 21.0%, 사회정의 19.8%, 분쟁해결 19.6%의 순으로 법의 기능을 인식하여 사회정의보다는 인권보호를 보다 중요시 하였던 반면, 수형자는 법의 기능을 인권보호보다는 사회정의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형자가 일반인에 비해 비교적 사회정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5장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수형자들 대상의 조사를 통해서 처벌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들은 억제이론 및 기타 이론적 논의에 기대어 기존 연구들에서 서로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수형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그것이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수형자들의 의식 속에 법과 범죄, 그리고 처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수형자들의 법에 대한 태도가 과연 범죄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처벌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조사결과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몇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준법의식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단지 이들 수형자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들에 분명 차이가 나는 점도 부인할 수없을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1/4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수형자의 43.6%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희박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의 기능이나 위력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으며 권력, 돈 등 사회적 자원들보다 법의 위력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경험하고 느

낀 것들, 특히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통한 법의 위력을 체험한 데서 오는 인식상의 변화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있어서 법은 사회적 강제규범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우에따라서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상정함으로써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준법의식이 희박해서 이들이 법을 어기게 되었는지, 아니면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하면서 법을 경시하는 의식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한 번의 조사연구가 아니라 여러 번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패널연구와 같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약한 준법의식은 장래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간과할수 없을 것이다.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나 처벌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향후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존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 중에는 처벌위협을 크게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범행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관계가 거의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처벌위협에 따라 수형자들에게 있어서 향후 범죄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위협이 범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험(즉 복역수)을 매개로 하여 향후 범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억제효과보다는 경험효과가 오히려 범죄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복역횟수가 낙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낙인효과 그 자체는 향후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 보다는 낙인효과가 더 확실하게 향후 범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정행정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수형생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과 향후 범죄가능성과는 부적인(negative)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것 이다. 교도소 내 규칙의 합리성, 교도관들의 태도, 소내 생활에의 적응정도 등이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할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면 교 도소 시설과 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수형자들로 하여금 재사회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수형자들은 대부분 교정시설이 수형자에게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시설이나 치료에 대한 불만족, 작업장이나 직 업훈련시설의 열악함과 더불어 특히 거실공간에 과다 수용되어 있는 문제 들을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수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로서 동일 시점에서 범죄에 대한 인지와 행동사이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인지가 범행 전이었는지 후인지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오차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오차가 전체 연구결과에 어떤 체계적인 왜곡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 복역횟수로 측정된 처벌의 경험과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그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억제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처벌에 대한 확실성이 개인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쳐 결국 복역횟수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처벌의 경험과 처벌의 두려움과의 관계는 반드시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과거의 경험적 연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범죄가능성을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이 연구의결과가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와 낙인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128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이 조사연구는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 다.

참고문헌

- 박철현. 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김지선. 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최병각·기광도. 2000.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
- 연성진·최병각·기광도. 2000.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 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ㆍ이성식. 1996.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kers, Ronald L. 1997.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Los Angeles: Roxbury Publishing Company.
- Anderson, Linda, Theodore Chiricos, and Gordon Waldo, 1977.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A comparison of deterrent effects, Social Problems 25: 103-114.
- Apospori, Eleni and Geoffrey Alpert, 1993. Research note: The role of differential experie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changes in perceptions of severity of legal sanctions over time, Crime and Delinquency 39: 184–94.
- Apospori, Eleni, Geoffrey Alpert, Raymond Paternoster, 1992. The effect of involvement of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neglected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perceptions, Justice Quarterly 9: 379–92.
- Archer, Dane, Rosemary Gartner, and Marc Beittel, 1983. Homicide and the death penalty: A cross-nattional test of a deterrence hypothesi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991–1014.
- Bailey, William and Ruth Peterson, 1989. Murder and capital punishment: A monthly time-series analysis of execution

- publi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722-43.
- Beck, Allen and Bernard Shipley, 1989.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83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Bishop, Donna, 1984. Deterrence: A panel analysis, Justice Quarterly 1 (1984): 311-28.
- Bowers, William and Glenn Pierce, 1980. "Deterrence or brutalization: What is the effect of executions?" Crime and Delinquency 26: 453-84.
- Burkett, Steven and David Ward, 1993. A note on perceptual deterrence, religiously based moral condemnation, and social control, Criminology 31: 119-34.
- Cheatwood, Derral, 1993. Capital punishment and the deterrence of violent crime in comparable counties, Criminal Justice Review 18: 165–181.
- Cochran, John, Mitchell Chamlin, and Mark Seth, 1994. Deterrence or brutalization? An impact assessment of Oklahoma's return to capital punishment, Criminology 32: 107–34.
- Decker, Scott, Richard Wright, and Robert Logie, 1993. Perceptual deterrence among active residential burglars: A research note, Criminology 31: 135-147.
- Dejong, Christina, 1997. Survival analysis and specific deterrence: Integra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models of recidivism, Criminology 35: 561-76.
- Ehrlich, Issac, 1975.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American Economic Review 65: 397-417.

- Erickson, Maynard, and Jack Gibbs, 1978. Objective and perceptual properties of legal punishment and deterrence doctrine, Social Problems 25: 253-64.
- Erlich, Isaac, 1973.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A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521-67.
- Felson, R. B., & Messner, S. F. 2000. The control motive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 86-94
- Felson, R. B., & Steadman, H. J. 1983. Situational factors in disputes leading to criminal violence. Criminology 21: 59-74.
- Foglia, Wanda, 1997. Perceptual deterr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norms among inner-city teenag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14-42.
- Grasmick, Harold and Robert Bursik,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24: 837-61, p.854.
- Grasmick, Harold, Brenda Sims Blackwell, and Robert Bursik, 1993a. Changes in the sex patterning of perceived threats of shame, embarrassment, and legal sanctions, Criminology 31: 41-69.
- Grasmick, Harold, Robert Bursik, and Bruce Arneklev, 1993b. Reduction in drunk driving as a response to increased threats of shame, embarrassment, and legal sanctions, Criminology 31: 41-69.
- Green, Donald, 1989. Past behavior as a measure of actual future behavior: An unresolved issue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0: 781–804.
- Green, Gary, 1986. General deterrence and television cable crime: A field experiment in social crime, Criminology 23: 629–45.

- Greenberg, David, 1975. The incapacitation effects of imprisonment: Some estimates, Law and Society Review 9: 541-80.
- Greenfeld, Lawrence, 1985. Examining Recidivism,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irschi, Travis, 1997.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Horney, Julie and Ineke Haen Marshall, 1992. Risk perceptions among serious offenders: The role of crime and punishment, Criminology 30: 575-94.
- Klepper, Steven and Daniel Nagin, 1989. The deterrent effect of perceived cera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revisited, Criminology 27: 721-46.
- Lanza-Kaduce, Lonn, 1988. Perceptual deterrence and drinking and driving among college students, Criminology 26: 321-41.
- Lempert, Richard, 1983. The effect of executions on homicides: A new look in an old light, Crime Delinquency 29: 88-115.
- Manor, M. William and Joseph Harry, 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190–203.
- Marvell, Thomas and Carlisle Moody, 1995. The impact of enhanced prison terms for felonies committed with guns, Criminology 33: 247–81.
- Marvell, Thomas and Carlisle Moody, 1997. The impact of prison growth on homicide, Homicide Studies 1: 205-233.
- McFarland, Sam, 1984. Is capital punishment a short-term deterrent to

- homicide? A study of the effects of four recent American execu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1014 –32.
- Nagin, Daniel and Raymond Paternoster, 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27: 467-85.
- Paternoster, Raymond, 1988. Examining three-wave deterrence models:

 A question of temporal order and specificatio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9: 135-63.
- Paternoster, Raymond, 1989. Decisions to participate in and desist from four types of common delinquency: Deterrence and the rational choice perspective, Law and Society Review 23: 7-29.
- Paternoster, Raymond, Linda Saltzman, Gordon Waldo, and Theodore Chiricos, 1983. Estimating perceptual stability and deterrent effects: The role of perceived legal punishment in the inhibition of criminal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270-97.
- Peete, Thomas, Trudie Milner, and Michael Welch, 1994. Levels of social integration in group contexts and the effects of informal sanction threat on deviance, Criminology 32: 85-105.
- Phillips, David, 1980.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139-48.
- Reckless, Walter, Use of death penalty, 1969. Crime and Delinquency 15: 43-51.
- Roth, Jeffrey, 1994. Firearms and Violence (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chuessler, Karl, 1952. The deterrent influence of the death penalty, Annal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284: 54-62
- Sellin, Thorsten, 1959. The Death Penalty (Philadephia: American Law Institute).
- Shinnar, Reuel and Sholomo Shinnar, 1975. The effect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n the control of crime: A quantitative approach, Law and Society Review 9:581-611.
- Silberman, Mathew, 1976. Toward a theory of criminal deterrence, ASR 41: 442-61
- Snortum, John, 1990. Drinking-driving compliance in Great Britain: The role of law as a 'threat' and as a 'moral eye-open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8: 479-99.
- Stack, Steven, 1987. Publicized executions and homicide, 1950–198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532–40.
- Territo, Leonard, James B. Halsted, and Max L. Bromley, 1998. Crime and Justice in America: A Human Perspective(fifth edi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Tittle, Charles R. and Alan R. Rowe, 1974. Certainty of arrest and crime rates: A further test of deterrence hypothesis, Social Forces 52: 455-62.
- Tittle, Charles,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New York: Frager, 1980.
- Tracy, Paul and Kimberly Kempf-Leonard, 1996.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riminal Careers. New York: Plenum Presss.
- Wallerstedt, John, 1984. Returning to Pris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Weisburd, David, Elin Waring, and Ellen Chayet, 1995. Specific deterrence in a sample of offenders convicted of white-collar crimes, Criminology 33: 587-607.
- Wilson, James Q., 1983. Thinking About Crime, rev. ed. New York: Vintage Books.
- Zeisel, Hans, 1982. A commnent on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by Philli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167 –69.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on Crime

Yeon, Seo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ate- induced punishment on crime. Drawing on the arguments of both deterrence and labeling theori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som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esting criminological theories.

Theoretical Background

Deterrence theory or rational choice theory states that threat of punishment deters people from committing crime. The more severe and certain the punishment, the less likely people are to engage in criminal behavior.

There are two dimensions of deterrent effects: general deterrence and specific deterrence.

General deterrence theory holds that crime rates are affected by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By punishing criminals, the general public will not risk breaking the law simply because they fear apprehension and punishment.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crime rates and the severity and certainty of legal punishment.

Since the early 1970s, much research on general deterrence has been conducted to see whether criminal punishment affects criminal behavior.

^{*} Ph.D. Director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Treatment Research,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Objective measure research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measures of punishment and crime rates is far from settled. The research studies of the influence of capital punishment showed some mixed results. One study of the immediate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on homicide rate revealed that highly publicized executions actually increased homicide rate during the 60 days following the execution.

Perceptual research on deterrence did not show any consistent effect of criminal punishment on criminal behavior. Some studies revealed that those who perceived a higher level of threat of punishment are less likely to commit criminal behavior. But others showed no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unishment and criminal behavior. One criticism of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is that perception of punishment is low among economically deprived people. Some argue that the deterrent effect is more prominent among those whose criminal behavior results in apprehension; perceptual research usually include samples of noncriminals or minor crimes.

The theory of specific deterrence holds that criminals will not repeat their criminal act when there is a strong connection between a criminal action and memories of its consequences. Specific deterrence does not seem to work because arrest and punishment have little effect on experienced criminals. Research showed that incarcerated criminals do not have a lower level of recidivism. Some studies actually found that the frequency of crime and punishment bring defiance rather than deterrence. Punishing those criminals may help lock them into a criminal career.

Labeling theory holds that negative social labels cause harm to the offender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important consequences for

their future behaviors. Empirical studies are concerned with the way labels are applied to some people not others. Research results reported that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and racial or ethnic backgrounds have an effect on labeling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there are also criticisms of labeling theory. State-induced criminal punishment is not affected by such individual factors as social class and racial and ethnic background but the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here crimes occur.

Results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943 prisoners from 13 prisons in Korea. Questionnaire items included respondent's perceptions of the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perceptions of labeling, willingness to commit crime after discharge, attitudes toward prison life, etc.

Concerning their attitudes toward prison life, about 6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prison rules are generally rational. And about 74% answered that they would not commit crime in the future. More than half of them g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prison staffs.

Results seem to suggest that the perceived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future criminal bahavior. However, controlling for other individual variables, perceived certainty and severity do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riminal behavior. Results also show that prisoners with previous criminal records tend not to feel threatened by legal sanctions. The number of past crim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future criminal behavior.

Regarding labeling, people who have been perceived a criminal after the first crime tend to have a lower self-esteem and a higher level of strain. It is also found that those labeled a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future criminal behavior, which is consistent with labeling theory. These results may be contrasted to the lack of the deterrent effect.

Prisoners also have a lower level of commitment to social norms. While 74.7% of the general population answered their strong willingness to abide by the law, only 56.4% of the prison sample answered their willingness to obey the law.

KIC 수형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금년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하나로서, 교정기관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법과 범죄에 대한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작성은 무기명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의 결과는 통계 처리되므로 귀하의 응답내용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의 내용들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문항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각 문항들에는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평소에 느끼고 계신 바나 경험을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을 이해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보호연구실

(137-1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142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1. 귀하께서는 우리의 현행 법이 우리 사회에서 주로 어떠한 역할 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골라 해당 번호에 V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1) 질서유지(2) 인권보호(3) 사회정의(4) 분쟁해결								
2.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분쟁해결에서 가장 유 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골라 해당 번호에 V표로(1) 법률(2) 권력(3) 돈(6) 기타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니까? 귀				
3. 아래의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분쟁해결 에 관한 견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오른쪽 해당 번호에				1 귀하의				
	①확실히	②그런	③그렇지	④전혀				
	그렇다	편이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	낫다 1	2	3	4				
2) 법보다는 상식이나 관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2	3	4				
3) 법보다는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1	2	3	4				
4) 법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법보다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1	2	3	4				
4.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집행 된다	고 생각하십	니까?						
	①확실ㅎ	2그런	③그렇지	④전혀				
	그렇다	편이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도 1	2	3	4				
2)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1	2	3	4				

3 4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큰 것 같다 		1	2	3	4
5.	귀하께서는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1) 반드시 지켜야 한다(2) 지키지		. 있디	-		
6.	귀하께서는 법의 준수와 위반 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견해에 다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확실히	2)그런	③그렇지	④전혀
		그렇다	Ŧ	l이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이기 때문지켜야 한다	문에	1	2	3	4
	2) 법을 안 지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7	1	2	3	4
	3)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 한다	1	2	3	4
	4) 법은 국가에서 제정한 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1	2	3	4

5) 법은 개인 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1 2 3 4

6) 법은 국민 서로가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 2 3 4

8) 다같이 법을 지켜야만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1 2 3 4

7) 혼자만 법을 지키지 않으며 얌체짓이 되기 때문에 1 2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144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①확실히	②그런	<u>③</u> 그렇지	④ 전혀
	그렇다	편이다	- 않은	그렇지
			편이다	나 않다
9) 법의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7	1 2	3	4
10) 법이 제정되는 절차에 잘못이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11)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12) 법이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13) 법이 사회적인 관습이나 관행에 어긋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14) 법이 개인적인 종교나 신념에 어긋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15) 본인이 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16) 다른 사람들도 법을 위반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둔 된다	1 2	3	4
17)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 2	3	4
18) 법을 위반하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된다면,	1 2	3	4
19) 법을 위반하는 것이 친구나 소속집단에 도움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된다면,	1 2	3	4

 20)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1
 2
 3
 4

 지키지 않아도 된다

7.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확실히	②그런	③그렇지	④전혀
	그렇다	편이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내가 법을 어긴다면, 주위사람들에게 쉽게 들킬 것	이다 1	2	3	4
2) 내가 법을 어긴다면,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다	1	2	3	4
3) 내가 법을 어긴다면, 즉시 경찰에 파악될 것이다	1	2	3	4
4) 내가 법을 어긴다면, 결국에는 경찰에 검거될 것이	다 1	2	3	4
5) 내가 법을 어겨 검거된다면, 처벌받을 것이다	1	2	3	4
6) 내가 법을 어겨 처벌된다면, 가족들은 상당히 실망할 것이다	1	2	3	4
7) 내가 법을 어겨 처벌된다면, 주위사람들은 나를 멀리할 것이다	1	2	3	4
8) 내가 법을 어겨 처벌된다면, 장래에 직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1	2	3	4
9) 내가 법을 어긴다면, 발각되지 않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1	2	3	4

 10) 내가 법을 어긴다면, 발각되지 않더라도
 1
 2
 3
 4

 체면손상을 느낄 것이다

8.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 문항을 읽고 순간적인 느낌이나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오른쪽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확실히	②그런	③그렇지	④전혀
	그렇다	편이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1	2	3	4
2) 나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	1	2	3	4
3)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 1	2	3	4
4)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1	2	3	4
5) 나는 당장 재미있다면 그 일부터 하는 편이다	1	2	3	4
6)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두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모험적이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는	1	2	3	4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9)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1	2	3	4
9) 나는 사람에게 굴씬을 구니다고 개의지 않고 나의 일을 하는 편이다	1	Δ	3	4
너거 길할 아도 원이나				
10)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1	2	3	4
쉽게 화를 내는 편이다	1	Δ	5	4
마게 어린 테니 먼 [기				

9. 귀하께서는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확실히	②그런	③그렇지	④ 전혀
	그렇다	편이다	않은	그렇지
			편이다	않다
1) 현재의 여건상 내가 추구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1	2	3	4
2)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편이다	1	2	3	4
3)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1	2	3	4
4)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면 억울함을 느낀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운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6)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10.	귀하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1) 매우 높다 __(2) 높은 편이다 __(3) 보통이다 __(4) 낮은 편이다 __(5) 매우 낮다

11. 귀하는 출소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다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1) 매우 높다 __(2) 높은 편이다 __(3) 보통이다 __(4) 낮은 편이다 __(5) 매우 낮다

12. 다음 중 귀하가 <u>처음으로</u> 범죄를 한 이후의 상황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 여 동의의 정도를 오른쪽 해당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①매우 그렇다		③대체로 아니다	④전혀아니다
1) 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2) 주변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1	2	3	4
3) 주변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1	2	3	4
4) 주변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5) 나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다	1	2	3	4
13. 귀하가 처음으로 범죄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호	<u>한 가지</u> ㅇ]유만 선택)		

13. 귀하가	처음으로 범죄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만 ~
(1)	재미로
(2)	친구에 끌려
(3)	격정에 휩싸여서
(4)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려고
(5)	명성을 얻기 위해
(6)	생계유지를 위해
(7)	마약 살 돈을 마련하려고
(8)	우연히
(9)	기타 ()
14. 귀하는	현재 무슨 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십니까?
(
15. 귀하의	형기는 얼마입니까?

(____)년 (____)월

16. 현재 귀하의 잔여형기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년 ()개월
17. 현재 귀하의 누진급수는 몇급입니까?
18. 귀하가 처음으로 교도소에 입소한 것은 몇 살 때였습니까? (만 세)
19 . 귀하는 몇 번째 복역하고 있습니까? (번째) (첫 번째인 경우는 20 번으로 ⇒
19-1. 지난번 교도소 석방 후 얼마 만에 다시 입소하였습니까? (년월)
19-2. 다음의 교정프로그램 중, 귀하가 지난 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받은 교정프로 그램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1)학과교육(2)수형자 정신교육(3)기술교육(4)귀휴(5)사회견학(6)합동접견(7)외부통근작업(8)복지담당관제(9)종교활동(10)교화・종교위원제도
19-3. 귀하가 지난 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받은 교정프로그램 중 사회적용에 도움으로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1)학과교육(2)수형자 정신교육(3)기술교육(4)귀휴(5)사회견학(6)합동접견(7)외부통근작업(8)복지담당관제(9)종교활동(10)교화·종교위원제도
20. 귀하는 이전에 몇 번의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과 ()회
21. 귀하는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1)폭행·상해(2)침입절도(3)절도(4)강도(5)성범죄 (6)사기·횡령(7)약물(8)기타()

22. 다음은 귀하가 범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귀하가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②중요하지	③다소	④매우
	중요하지	않 <u>은</u>	중요하다	중요하다
	않다	편하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1	2	3	4
빚이 많아서	1	2	3	4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로	1	2	3	4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1	2	3	4
직장을 잃어서	1	2	3	4
재미있어서	1	2	3	4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1	2	3	4
친구가 하자고 해서	1	2	3	4
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서	1	2	3	4
먹고 살기위해 돈이 필요해서	1	2	3	4
강한 긴장과 초조감 때문에	1	2	3	4
흥분해서	1	2	3	4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1	2	3	4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1	2	3	4
	①전혀	②중요하지	③다소	④매우
	중요하지	않 <u>은</u>	중요하다	중요하다
	않다	편이다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라고 시켜서	1	2	3	4
피해자가 미워서	1	2	3	4
사회가 싫어서	1	2	3	4

23. 귀하가 다음의 각 범죄에 대해서, 같은 범죄를 연속해서 두 번 행한다면, 귀하가 체포될 가능성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폭행 · 상해
 __(1)매우 높다
 __(2)대체로 높다
 __(3)대체로 낮다
 __(4)매우 낮다

 침입절도
 __(1)매우 높다
 __(2)대체로 높다
 __(3)대체로 낮다
 __(4)매우 낮다

 절도
 __(1)매우 높다
 __(2)대체로 높다
 __(3)대체로 낮다
 __(4)매우 낮다

 강도
 __(1)매우 높다
 __(2)대체로 높다
 __(3)대체로 낮다
 __(4)매우 낮다

 성범죄
 __(1)매우 높다
 __(2)대체로 높다
 __(3)대체로 낮다
 __(4)매우 낮다

 악물범죄
 __(1)매우 높다
 __(2)대체로 높다
 __(3)대체로 낮다
 __(4)매우 낮다

24. 귀하가 다음의 각 범죄를 행해서 체포되었다면, 처벌의 강도는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폭행 · 상해 ___(1)매우 높다 ___(2)대체로 높다 ___(3)대체로 낮다 ___(4)매우 낮다

침입절도	(1)매우 높다	(2)대체로 높다	(3)대체로 낮다	(4)매우 낮다
절도	(1)매우 높다	(2)대체로 높다	(3)대체로 낮다	(4)매우 낮다
강도	(1)매우 높다	(2)대체로 높다	(3)대체로 낮다	(4)매우 낮다
성범죄	(1)매우 높다	(2)대체로 높다	(3)대체로 낮다	(4)매우 낮다
사기 · 횡령	(1)매우 높다	(2)대체로 높다	(3)대체로 낮다	(4)매우 낮다
약물범죄	(1)매우 높다	(2)대체로 높다	(3)대체로 낮다	(4)매우 낮다

25. 다음은 수형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에 대해서 동의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	②대체로	③대체로	④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1	2	3	4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1	2	3	4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가족의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었다	1	2	3	4
건강이 좋아졌다	1	2	3	4
인내력이 생겼다	1	2	3	4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1	2	3	4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1	2	3	4

	①매우	②대체로	③대체로	④ 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독서나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술이나 담배, 약물을 끊을 수 있었다	1	2	3	4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1	2	3	4

26. 다음 수형생활 중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	②대체로	③대체로	④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1) 소내 생활수칙이나 규칙은 합리적이다	1	2	3	4
2) 소내 생활수칙이나 규율은 공정하게 적용된다	1	2	3	4
3) 나는 수형생활에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4) 수형생활은 내게 매우 고통스럽다	1	2	3	4
5) 수형생활을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1	2	3	4
6)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공정하다	1	2	3	4
7)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에 대해 적절히 잘 처리해준다	1	2	3	4

30. 귀하의 출생연도는? (19____ 년)

	①매우	②대체로	③대체로	④전혀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8) 수형생활 중 병에 걸리거나 아플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	2	3	4
9)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	악한다 1	2	3	4
10) 교도소 내 작업장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이 적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게 1	2	3	4
11) 교도소의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12)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27. 귀하는 형이 확정된 후,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면회를 하였습니까? (1) 한달에 두번 이상 (2) 한달에 한번 정도 (3) 두세달에 한번 정도 (4) 6개월에 한번정도 (5) 1년에 한번정도 (6) 거의 면회하지 않음				
28. 귀하는 형이 확정된 후,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까?(1) 일주일에 두번 이상(2) 일주일에 한번 정도(3) 한달에 한두 번 정도(4) 두세달에 한번정도(5) 6개월에 한번정도(6) 1년에 한번정도(7) 한번도 편지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				
29. 귀하는 교도소 복역 중에 정벌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 (1) 있다(2) 없다	<i> 까</i> ?			
〈 배경질문 〉				

_	귀하의 학력은? _(1) 무학(2) 국졸 이하(3) 중 중퇴 및 졸업(4)고 중퇴 및 졸업 _(5)전문대 중퇴 및 졸업(6) 4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7)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이상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1) 미혼(2) 결혼(3) 사별(4) 이혼(5) 별거 (6) 기타()			
	귀하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주위에 비하여 생활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높은 편이다(2)약간 높은 편이다(3) 평균 정도이다 (4) 약간 낮은 편이다(5)매우 낮은 편이다			
	4.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귀하는 누구의 수입으로 생활하였습니까? (1)본인(2)부모(3)형제·자매(4)배우자(5)친구의 도움 (6)친척집에서 생활(7)기타()			
35.	귀하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귀하 가정의 연간 총수입액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귀하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1) 기독교(2) 불교(3) 천주교(4) 종교 없음 (5) 기타()			
	귀하가 출소하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1) 부모의 집(2)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3) 친척집(4) 아내(동거녀)/자식이 있는 내 집(5) 자식집(6) 친구집(7) 교도소 동료의 집(8) 없다(9) 기타 ()			

[연구자 약력]

연 성 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University of Oklahoma 석사학위 취득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박사학위 취득 University of South Alabama 조교수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저서 Linking the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Systems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Ⅱ)- 총론 및 경찰·소방분야(공저)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Ⅲ)- 건설·건축, 환경분야(공저) 규제개혁정책과 부정부패(Ⅲ)- 식품위생, 세무분야(공저) 외 다수

2003 - 30

처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발행인 이 재 상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우면동 142 전화: (02) 575 - 5282/9 등록 1990. 3. 20. 제21-143호 인쇄 화신문화(02) 2277-0624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출판실 (02) 571-0363

< 정가 7,000원 >

ISBN 89 -7366 -501 -4